발간등록번호 | 11-1210000-000208-14

정부혁신 보다나은 국세청

www.nts.go.kr/kor 국세청

금융소득 원천징수 실무

NATIONAL TAX SERVICE

2019. 1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머 리 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원천징수 업무를 이행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이 접목된 핀테크(fintech)산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에 따라 금융관련 정보화 기술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금융상품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저금리 시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혁신과 신산업 창출·이종산업간 융합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펀드(fund),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의 금융상품에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면서 투자의 다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해진 금융상품 구조와 조세특례제도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를 이해하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금융소득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와 지급명세서 작성 요령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더불어 기존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금융소득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의 업무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법인납세국장 [illegible]

CONTENTS

제1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_1

1. 이자소득의 종류 ····· 2

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2
나. 국내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10
다.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11
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12
마.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14
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22
사. 비영업대금의 이익 ····· 24
아. 유형별 포괄과세제도에 의한 이자소득 ····· 25
자. 이자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26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27

3. 이자소득금액 계산 ····· 28

4. 이자소득 수입시기 ····· 28

가. 이자소득 수입시기 ····· 29

5.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 ····· 30

가. 원천징수시기 특례 ····· 31

6. 원천징수의 특례 ····· 33

가. 원천징수의 면제 ····· 33
나. 원천징수의 배제 ····· 33
다. 원천징수의 위임 및 대리 ····· 33
라. 원천징수의 승계 ····· 33

CONTENTS

마.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34
바.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34
사. 소액부징수 ····· 34

제2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_35

1. 배당소득의 종류 ····· 36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36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36
다. 의제배당 ····· 37
라.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50
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50
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60
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60
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주배당 ····· 61
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 ····· 61
차. 유형별 포괄과세제도에 의한 배당소득 ····· 61
카. 배당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64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65

3. 배당소득 수입시기 ····· 66

4.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 67

5. 원천징수의 특례 ····· 68

가. 소액부징수 ····· 68

제3장 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_69

1. 원천징수대상 법인세 ····· 70
가. 원천징수대상 소득 ····· 70
나. 금융회사 등의 범위 ····· 71
다. 원천징수제외 소득 ····· 73
2.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매도시 원천징수 ····· 75
가. 채권등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 ····· 76
나. 집합투자증권 특례 ····· 79
다.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 특례 ····· 79
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원천징수 ····· 80
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범위 ····· 80
나. 이자상당액 귀속 ····· 80
다. 원천징수 및 환급 ····· 81
4. 수입시기 ····· 81
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81
나.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 ····· 82
5. 원천징수시기 ····· 82
6. 원천징수 위임 및 대리 ····· 82
7.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83
8.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83
가. 일반적인 납부 ····· 83
나. 반기별 납부 특례 ····· 84
9. 소액부징수 ····· 84

CONTENTS

제4장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_85

1. 신탁의 종류 ····· 87

가. 특정금전신탁 ····· 87
나. 불특정금전신탁 ····· 87
다. 연금신탁 ····· 88
라. 금전채권신탁 ····· 88
마. 부동산신탁 ····· 89
바. 상속을 위한 신탁 ····· 89
사. 공익사업을 위한 신탁 ····· 91

2. 소득세법상 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 92

가. 납세의무의 범위 ····· 92
나. 소득의 구분 ····· 92
다. 원천징수시기 ····· 92
라. 원천징수의무자 특례 ····· 93

3. 법인세법상 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 93

가. 납세의무의 범위 ····· 93
나. 원천징수시기 ····· 93
다. 수입시기 ····· 93
라. 원천징수의무자 특례 ····· 94

제5장 예탁제도와 원천징수 _95

1. 증권 예탁제도 ····· 96

가. 증권 등의 예탁 ····· 96
나. 예탁증권 등의 권리행사 ····· 97

2. 예탁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 98
가. 예탁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 ····· 98
나. 예탁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99
3. 예탁주식에 대한 원천징수 ····· 100
가.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 ····· 100
나. 예탁주식 배당주식에 대한 원천징수 ····· 101

제6장 비거주자 등 금융소득 원천징수 _103

1. 납세의무자 ····· 104
가. 비거주자 ····· 104
나. 외국법인 ····· 104
2. 원천징수대상 소득 ····· 105
가. 국내원천 이자소득 ····· 105
나. 국내원천 배당소득 ····· 105
3. 원천징수 ····· 105
가. 일반적인 원천징수 ····· 105
나. 원천징수 특례 ····· 106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 106
4.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106
가. 비거주자 ····· 106
나. 외국법인 ····· 108
5. 비거주자 판정 요령 ····· 111

CONTENTS

제7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특례 _113

1.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 114

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면제 ····· 114
나.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 115
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 116
라.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 116
마. 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 118
바.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 119
사. 개인연금저축 ····· 120
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124
자. 장기주택마련저축 ····· 125
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129
카.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 130
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 ····· 132
파. 비과세 종합저축 ····· 133
하. 우리사주조합원 및 농·수협 근로자 배당소득 ····· 136
거. 조합 등 출자금 ····· 140
너. 세금우대종합저축 ····· 141
더. 조합 등 예탁금 ····· 143
러.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44
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소득 ····· 147
버.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 148
서. 재형저축 ····· 150
어.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 155
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158
처.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 ····· 161
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161
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167
퍼. 장병내일준비적금 ····· 169

2. 소득세법상 특례 ····· 170

가. 공익신탁의 이익 ····· 170
나.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170
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 ····· 170
라. 비실명 금융소득 분리과세 ····· 171
마. 금융실명법에 의한 분리과세 ····· 171
바.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 ····· 172

제8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_173

1.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 ····· 174

가. 이자소득 ····· 174
나. 배당소득 ····· 174
다. 외국 원천징수세액 ····· 175

2. 실지명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원천징수세율 ····· 176

3.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세율 ····· 177

제9장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_183

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184

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184
나.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185
다. 원천징수부 비치·기록 ····· 185

CONTENTS

2. 지급명세서 제출 ····· 185

가. 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 185
나.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 188

3. 가산세 ····· 189

가.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 189
나.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가산세 ····· 191

4.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 193

가. 징수의무자 ····· 193
나. 소득자 ····· 194
다. 지급내역 ····· 199

5. 지급명세서 작성 사례 ····· 212

가. 내국법인(비상장)이 주주(대주주)에게 일반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214
나. 내국법인(비상장)이 주주(소액주주)에게 일반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215
다. 내국법인이 개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 216
라. 개인이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 217
마. 영농조합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조합원(소액주주)에게
배당금(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 분) 지급 ····· 218
바. 영농조합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조합원(소액주주)에게
배당금(과세소득 발생 분) 지급 ····· 219
사. 농업회사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출자자(소액주주)에게
배당금(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 분) 지급 ····· 220
아. 농업회사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출자자(소액주주)에게
배당금(과세소득 발생 분) 지급 ····· 221
자. 내국법인(비상장)이 우리사주조합원(소액주주 등 비과세요건 충족)에게 배당금 지급 ··· 222
차. 내국법인(비상장)이 우리사주조합원(비과세요건 미충족한 소액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 223
카. 내국법인(비상장) 감자차익에 의한 의제배당(대주주, Gross-up 대상) ····· 224

타. 내국법인(비상장) 자본전입(토지재평가차익)에 의한 의제배당
(대주주, Gross-up 제외 대상) ····· 225
파.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
(상장외국법인의 배당, 소액주주, 외국 원천징수세율 10%) ····· 226
하.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경우
(상장외국법인의 배당, 소액주주, 외국 원천징수세율 15%) ····· 227
거. 기타임의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이자소득 지급
{△△동창회(△△△)에게 정기예금 이자소득 지급} ····· 228
너. 보험료 지급{10년 미만 저축성보험(생명보험)의 보험료 지급} ····· 229
더. 보험료 지급{10년 이상 저축성보험(생명보험)의 보험료 지급} ····· 230
러. 신탁재산에 소득 지급(채권발행법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231
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소득 지급
(신탁업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 232
버. 장기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자소득 발생기간 : 1996.1.1.~2018.12.31.) ····· 233
서. 비거주자 소득이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제한세율 10%) ····· 234
어. 거주자 소득이 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브라질 채권 이자소득) ····· 235

* 참고자료 _237

1.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관리제도 ····· 238

가. 세금우대저축 종류 ····· 238
나. 세금우대저축 통보기한 ····· 238
다. 세금우대저축 열람 등 ····· 238
라. 세금우대저축자료 보관 ····· 239
마. 비밀유지 등 ····· 239
바. 가산세 ····· 239

2. 과세자료(조세특례 적용대상 금융상품) 제출 ····· 240

가. 과세자료제출법 개정 ····· 240
나. 제출기관 ····· 240
다. 제출상품 및 서류 ····· 240
라. 제출서류 :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는 서류 ····· 240
마. 제출시기 ····· 241
바. 제출서식 ····· 241
3. 원천징수 신고자료 서식 ····· 242

✲ 2019년 귀속 금융소득 개정세법 ····· 281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281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282

국세청
www.nts.go.kr

제1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세청
www.nts.go.kr/kor

제 1 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의 종류 (소법 §16)

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법 §16①1 · 2 · 5 · 6)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에 발행하는 공채나 사채 따위의 유가증권으로 발행주체, 이자지급방법, 보증유무, 상환기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발행주체 : 국채, 지방채, 비금융특수채[1], 통안채[2], 금융채[3], 회사채, 외국채
② 이자지급방법 : 할인채[4], 복리채, 단리채, 이표채[5]
③ 보증유무 : 보증채, 무보증채[6]
④ 상환기간[7] :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⑤ 원금상환방식 : 만기상환채, 분할상환채
⑥ 액면이자 확정여부[8] : 고정금리채, 변동금리채, 역변동금리채
⑦ 발행가액 : 액면발행채, 할인발행채, 할증발행채

증권은 사전적으로 ①증거가 되는 문서나 서류, ②유가증권[9]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③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서의 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1) **비금융특수채** : 공사, 공단 등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등이 발행하는 채권
2) **통안채** :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이라고도 한다.
3) **금융채**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금융기관, 카드사, 리스사,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 **할인채** : 단리로 계산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액면금액에서 차감하여 발행하는 채권
5) **이표채** : 일정기간마다 이자지급을 약속하는 쿠폰이 부여된 채권
6) **무보증채** : 지급보증없이 발행자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채권
7) 통상 만기 1년 이하의 채권을 단기채, 5년 이하를 중기채, 5년 초과를 장기채로 구분한다
8) 고정금리채는 액면이자율이 사전에 정해진 채권, 변동금리채는 액면이자율이 특정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매기간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이 가변적인 채권, 역변동금리채는 기준금리의 움직임과 역방향성을 갖도록 설계된 채권
9) **유가증권** :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권[10]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채권등의 종류 (소법 §46, 소령 §102)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채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③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⑤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 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 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⑧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국세청
www.nts.go.kr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으로 다음의 증권을 포함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등은 제외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11]는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어음[12].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되,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2) 채권등의 소득 구분

가) 국채 등 이자소득 (소령 §22의2)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11)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 :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할인 판매 된다. 따라서 만기 후 별도의 추가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한다.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은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으로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12) **발행어음(자기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금융상품이다. 즉,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어음으로 예치기간이 보통 90일이내이며, 기업어음에 비해 수익률은 낮다.

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기업이 발행한 어음(융통어음 또는 진성어음)을 매출이 용이하도록 재구성하여 새로이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즉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어음을 고객에게 팔기 쉽도록 만기와 금리를 재구성하여 새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에서만 발행하는 것으로 현재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예금은행, 상호신용금고에서 발행하고 있다.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 기업어음은 신용이 양호한 기업이 운전자금 등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으로 통상 종합금융회사가 할인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금융상품이다. 기업어음은 보통 예치기간이 91일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를 수익률로 하며 선이자 또는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여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중개회사(증권회사)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CP는 순수하게 발행기업의 신용으로 발행되며 통상 CP로 불리는 무담보 CP, 발행기업의 신용도가 부족하여 다른 회사가 상환을 보증하는 보증 CP, 부동산 등의 담보를 근거로 발행되는 담보 CP로 구분된다.

국채・산업금융채권[13] 및 예금보험기금채권[1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2013.2.15. 법률개정[15]으로 2015.1.1.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국채 등의 이자・할인액

구분	내용	이자소득
이자	국채 등 이자	○
할인액	국채 등 공개시장에서 통합 발행하는 경우	×
	원금이자분리국채	○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	2014.12.31.이전 발행분	×
	2015. 1. 1.이후 발행분	○

예규. 서면법규과-898, 2013.08.19.

국채를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발행일 이전의 채권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3) **산업금융채권**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국가 주요 산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특수채의 일종이다.

14) **예금보험기금**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기금)를 납입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경영부실 등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행하였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채권 :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을 조성한다.

15)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4356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www.nts.go.kr

나) 채권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 (소법 §46, 소령 §102)

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등(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채권등에 대한 이자등의 지급에는 전환사채[16]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17]의 주식교환, 신주인수권부사채[18]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등의 매도에는 증여, 변제 및 출자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

16) **CB(Convertible Bond)** :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전환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권 행사 이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존재하고, 전환권 행사시에는 채권이 소멸되고 발행회사의 주식을 받아 주주가 된다. 전환사채권자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부진하여 주가하락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보통사채보다는 저리이긴 하나 발행시 약속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원금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전한 투자수단이 된다. 만기보장수익률이란 전환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환사채 투자자가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발행회사가 보장해 주는 수익률로 전환사채 발행시 발행조건에 기재된다.

17) **EB(Exchangeable Bond)** : 교환사채란 교환사채 소지인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발행조건에 명시된 교환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자사주 포함 : 신규발행분이 아닌 기발행 보유분)으로 교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교환사채는 사채 자체가 발행회사 보유 유가증권으로 교환되는 것으로 교환시 발행회사의 자산(보유 유가증권)과 부채(교환사채)가 동시에 감소하게 되는 특징이 있으며 수시로 주식과 교환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고 발행회사의 자본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교환사채는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전성이 높고 주가상승시 교환권 행사를 통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교환권의 행사는 모든 주식관련사채와 마찬가지로 주가의 상승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약세장세에서는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18) **BW(Bond with Warrant)**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발행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에 비해 신주대금을 별도로 납입(현금납입형의 경우)해야 하므로 투자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보통 전환사채보다 채권수익률이 높게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의 분리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대금 납입 형태에 따라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사채로 대용납입)으로 구분한다.

예규. 법규소득2010-462, 2010.02.03.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의 20%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20%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 (소령 §193의2)

(가) 적용 이자율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매도일(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② ①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나) 전환사채 등 적용 이자율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비교

구 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유사한 점	발행조건	발행회사에 유리(보통 사채보다 낮은 이자율이고, 상환기간은 장기이다.)	
	신주의 가격	사채발행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다.	
	권한행사시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수는 증가, 사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를 획득	
차이점	사채에 부여된 권리	전 환 권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전환권 행사 후 사채는 소멸한다.	신주인수권 행사 후에도 사채는 존속한다.
		전환권행사에 신규자금 필요없다.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신규자금이 필요하다.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비교

구 분	교환사채	전환사채
대상 유가증권	발행회사 보유 유가증권	발행회사 주식
발행회사의 요건	상장법인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자본금 변동	없음	권리행사시 자본금 증가
대주주 지분율	변동없음	하락
권리행사후 지위	사채권자 지위 상실	사채권자 지위 상실
주주가 되는 시기	교환을 청구한 때	전환을 청구한 때
주식의 취득가격	교환가격	전환가격

(다) 주식으로 청구된 이후의 적용 이자율

전환사채등이 주식으로 청구(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된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부터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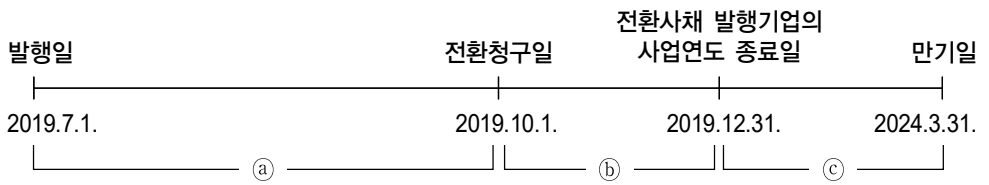

ⓐ : 만기보장수익률 적용
ⓑ : 주식으로 보아 채권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자지급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자율 적용
ⓒ : 주식이므로 채권등의 범위에서 제외

(2) 채권등의 보유기간 입증 (소령 §102)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①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한다.

③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공정증서는 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소법 §133의2, 소령 §193의2)

(가) 일반적인 채권등

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등[발행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국세청
www.nts.go.kr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한다.

또한,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을 원천징수하는 때로 한다.

참고. 채권 매도 및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 A(법인) → B(개인) : 원천징수의무자(A)
- B(개인) → A(법인) : 원천징수의무자(A)
- C(법인) → D(법인) : 원천징수의무자(C)

(나) 선 원천징수 채권등 중도매도[19]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국내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소법 §16①3·7)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민법」의 소비임치계약[20]에 의하여 고객에게 채무를 부담

19)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 2013.2.15>**
제26조(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 **소비임치계약** : 임치계약중 수치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붙어 있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이 있다. 소비임치와 소비대차는 수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에 반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소비임치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비대차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반환을 최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으로 크게 지급방식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지급을 요청하면 은행이 언제든지 지급에 응해야 하는 예금으로 당좌예금[21], 보통예금, 별단예금[22]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자가 없거나 저축성예금에 비해 매우 낮다.

저축성예금은 예금주가 지급을 요청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정기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규. 원천-64, 2012.02.09.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함으로써 추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해당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소법 §16①4)

신용계란 일정한 구좌별로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여 구좌별로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부금이란 은행의 상호부금[23]과 동일한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부금과 달리 1회차 납입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1) **당좌예금** : 기업이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지급을 은행에 위임하고자 개설하는 예금이다. 은행은 기업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 등을 제시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당좌예금 잔액 또는 당좌대출 한도내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22) **별단예금** : 은행업무상 처리가 곤란한 예금이나 자금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설한 편의적인 계정으로 잡종예금의 하나이다. 별단예금은 예금증서나 통장으로 발행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나 영수증 또는 예치증만을 발행해 준다. 대부분 자기앞수표 발행에 활용되고 부도대금, 주식배당금 지급 등이 별단예금으로 처리된다.

23) **상호부금** : 제도상 정기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대출 목적으로 상호부금에 가입했으나, 최근에는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짐에 따라 대출보다는 저축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국세청
www.nts.go.kr

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소법 §16①8)

1)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소령 §24)

환매조건부매매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24] 또는 증권의 매매방식을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금융회사 등"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권매매 차익은 자본이득으로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형식적으로는 채권·증권의 매매거래이나 실질적인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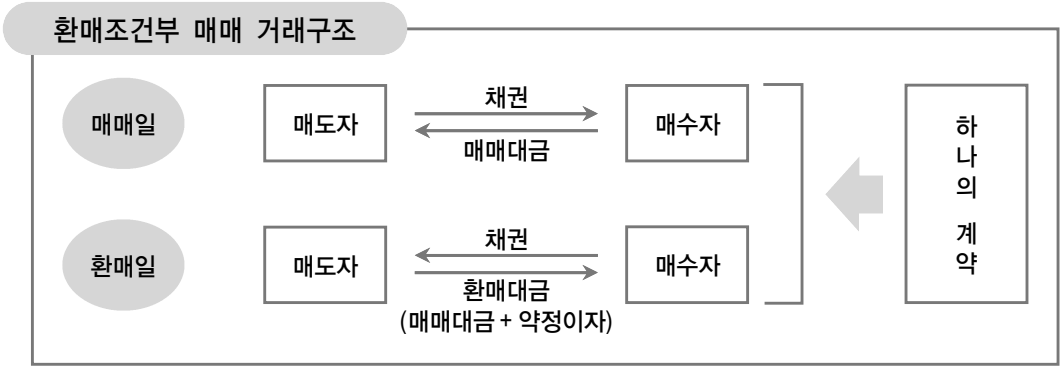

24)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 :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 사이에 시중통화 수위와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소령 §10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이 혼합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서의 채권등의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②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채권대차거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위 ①, ②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및 제133조의2(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한다.

<연속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시 매매차익 및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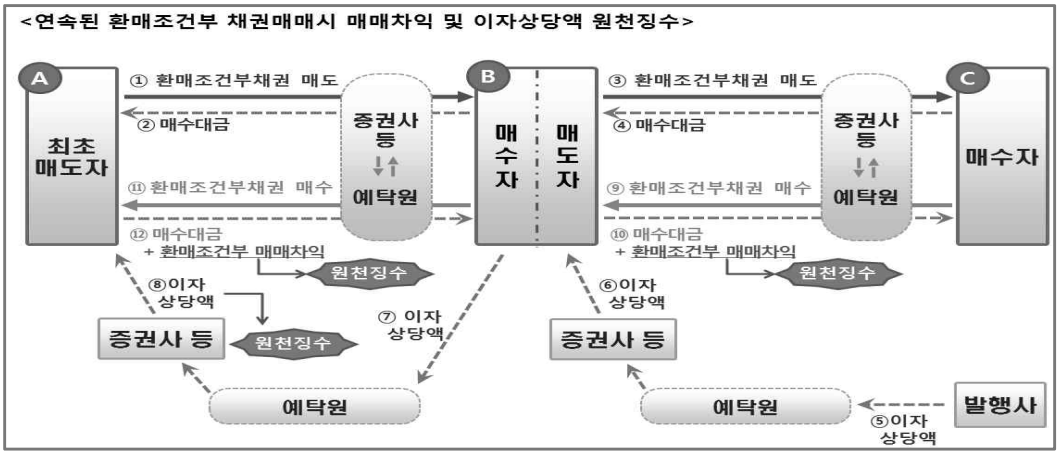

예규. 재소득46073-48, 2002. 2. 22.

환매조건부처리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지급 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마.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법 §16①9)

보험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험상품 분류

구분 기준	보 험 명	보험 설명
보험업법	생명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손해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제3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가입목적	저축성보험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
	보장성보험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만기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만기환급형보험, 재해나 질병, 간병상태 발생시 고액의 급부를 보장하는 제3보험 등이 있다.

구분 기준	보 험 명	보험 설명
적립금 운용방식	일반계정	투자되지 않고 공시이율로 적용받는 계약자적립금으로 보험회사의 대부분의 상품은 일반계정에서 운용.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됨
	특별계정[25]	보험사업자가 특정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적립금을 보험사의 기타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 특별계정은 보험사(계약관리), 운용사(펀드운용), 수탁사(적립금관리)가 업무영역별로 관리만 하고 있을 뿐 자금의 실질귀속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보험회사 등이 파산하더라도 특별계정은 채권상환에 사용할 수 없음.

1) 보험상품의 유형

가)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생존보험(생명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개인연금[26] 상품이다.

연금보험에는 연금지급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기간을 확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연금개시전에 계약자가 2개 이상의 급부를 병행 선택한 혼합연금형 등이 있다.

---

25)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 · 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 · 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개인연금상품은「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금상품과 일반적인 연금상품으로 구분된다.「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금상품에는 개인연금저축상품(동법 제86조)과 연금저축상품(동법 제86조의2)이 있으며 이들 상품에는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일반적인 개인연금상품에는「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2000년 12월부로 판매가 중단되어 기존의 가입자에 의한 추가불입만 가능하며 현재는 연금저축상품만 판매되고 있다.

나)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생명보험)의 일종으로서 보장기간이 종신이며, 사망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금은 사망하였을 때에만 지급되므로,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다)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생존보험(생명보험)의 일종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사의 별도 특별계정으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자산운용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에 반영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변동되는 상품이다.

일반보험과 변액보험의 비교

구 분	일반보험	변액보험
보 험 금	보험가입금액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
예금자보호	적 용	미 적 용
투자위험 부담	회 사	계 약 자
자산운용	일반계정	특별계정
적용이율	예정이율(공시이율)	실적배당 수익률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가) 이자소득 과세대상 보험차익 (소령 §25)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생일축하금, 장수축하금 포함)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예규. 원천세과-737, 2010. 9. 15.

거주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해당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 이자소득 제외대상 보험차익

다음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보험계약[27]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수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억원 이하의 저축성보험계약,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2013.2.15.)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과세제외 보험계약은 계약체결시점부터 (1)~(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2)와 (3)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1) 1억원(2013.2.15.~2017.3.31.계약 체결분은 2억원) 이하의 저축성보험계약

(2)와 (3)의 보험계약을 제외한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27)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의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삭제(13.2.15.)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99.12.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국세청 www.nts.go.kr

다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규. 원천세과-312, 2012. 6. 4.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가입자가 기 수령한 연금월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규. 원천세과-454, 2009. 2. 10.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음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①~④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것)

①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③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28]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④ 1인당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것(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

(3)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①~⑤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것)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②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28)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계약해당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장보험료(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및 기본적립보험료(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추가적립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부정기적으로 추가납입한 비정액 보험료로서 적립보험료로만 구성된다. 단, 추가적립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③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이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점을 사망시점으로 한다.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⑤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frac{\text{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text{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times 3$$

(4) 기타 제외대상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다) 보험계약 변경시 최초납입일

종전에는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기간을 계산하였으나

예규.

○ **원천세과-441, 2010. 5. 28.**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기간(10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80, 2009. 6.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www.nts.go.kr

2013.2.15. 법령 개정으로 위 저축성보험계약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어느 하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①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다만, 2013.2.15. 전에 체결된 종전의 보험계약[29]에 대해서는 ③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한다.

또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하여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해당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위 (2)의 ③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보험료 계산 특례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예규.

○ **소득46011-792, 2000. 8. 25.**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1388, 2003.07.2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 및 같은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9) 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보험금을 받는 자)
보 험 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 험 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과세제외 대상 저축성보험차익 요건 개정 연혁

2013.2.14.**이전 계약 체결**	2013.2.15. **이후 계약 체결**	2017.4.1. **이후 계약 체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자 1인당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험

국세청
www.nts.go.kr

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법 §16①10)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범위 (소령 §26)

직장공제회라 함은「민법」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초과반환금은 납입금 초과이익(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과 반환금 추가이익(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한다.

초과반환금 = 납입금 초과이익 + 반환금 추가이익
납입금 초과이익 = 반환금 - 납입공제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과세대상소득[30]으로 한다.

2) 산출세액 계산 (소법 §63, 소령 §12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납입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 - 20년)

산출세액 = [{(초과반환금 - ① - ②) / 납입연수} × 기본세율] × 납입연수

30)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4467호,1994.12.31.>**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가)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반환금 추가이익 산출세액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text{산출세액} = \text{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times \frac{\text{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text{납입금 초과이익}}$$

예규.

○ **원천세과**-170, 2011.03.2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에 따른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반환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원천**-1874, 2008.09.02
1998.12.31 이전 직장공제회가입자가 해당 규약에 따라 받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 부칙 제4조(1994.12.22 법률 제480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46011-21298, 2000.11.06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1998.12.31 이전에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4, 2005.10.05
법무사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법무사회가 회원탈퇴시 당해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 중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0752, 2001.12.20
퇴직교원이 대한교원공제회에 종신급여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입금액을 불입하고 불입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www.nts.go.kr

사.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법 §16①11, 소령 §51⑦)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예규.

○ **원천**-256, 2014.7.10.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차입하는 사인간의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065, 2011.12.20.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31]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1053, 2010.10.06.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제세과-** 567, 2007.10.1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당시 비영업대금 이익 규정)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31)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아. 유형별 포괄과세제도에 의한 이자소득 (소법 §16①12)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위 가. ~사.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1) 채권대차거래 이자상당액 (소령 §26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예규.

○ **원천세과-721, 2012.12.28.**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국내법인이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일 이후 중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3조의2에 따른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966, 2011.1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4항에 의하여 대토보상을 현금 전환하여 보상받는 경우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WWW.NTS.GO.KR

자. 이자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소법 §16①13)

위 가.~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32]이 1), 2)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소령 §26⑤1)

①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이자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②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③ 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 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소령 §26⑤2)

①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

②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 등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③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기본통칙 16-0…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예규.

○ **서면법규과-**94, 2014.02.04.
개인투자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미화표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해당 금융회사를 통하여 전환사채의 만기에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파생상품의 거래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득-44, 2014.1.23)

○ **소득세과-**821, 2012.11.08.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www.nts.go.kr/kor

3. 이자소득금액 계산 (소법 §46의2)

이자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즉,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 등을 위한 자금원이 차입금으로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이때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며,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이다.

저축성보험차익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금액과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한다.

예규. 소득46011-1422, 1998. 5. 28.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4. 이자소득 수입시기 (소령 §45)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수입시기는 이러한 과세기간 즉,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지급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날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 이자소득 수입시기

이자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함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비영업대금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위에서 열거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예규.

○ **재소득** 46073-71, 2002. 4. 13.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되는 것임.

○ **서일**46011-10557, 2001. 12. 1., **소득**46011-2842, 1998. 10.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27, 1999. 10. 4.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83, 1987. 01. 23.
신종기업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040, 2000. 07. 26.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에 납입할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 (소령 §190)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본통칙 127-0…5【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가. 원천징수시기 특례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한 조건의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특정일을 지급일로 하여 그 특정일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특정일을 지급일로 정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지급한 날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1) 할인매출하는 날

다음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①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② 전자단기사채[33] 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③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

33) **전자단기사채** : 전자단기사채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하는 금융상품으로 기업어음(CP)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2013.1.15. 도입되었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에 비해 발행과 유통절차가 간소하는 등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행금액 및 만기	발행금액이 1억원 이상, 만기가 1년 이내
납입 및 상환 방법	취득시 발행금액을 일시에 납입,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
주식관련 권리 부여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담보설정 금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설정 금지
세제혜택	만기가 1개월 이내인 경우 원천징수 면제

2)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4~26)

□ 용어정리
- ○ 동업기업 :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 ○ 배분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 ○ 분배 :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 과세특례
- ○ 동업기업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 제3조 및「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대상
- ○「민법」에 따른 조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
-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6. 원천징수의 특례

가. 원천징수의 면제 (소법 §154)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원천징수의 배제 (소법 §155)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155-0…1 【원천징수의 배제】

법 제155조의 규정에서의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포함)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원천징수의 위임 및 대리 (소법 §127)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등(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어음 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 원천징수의 승계 (소법 §157)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청
www.nts.go.kr/kor

또한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마.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소법 §155의2)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수익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날을 지급시기와 수입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2008.12.26. 법률개정으로 2009.1.1.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는 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소법 §155의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 소액부징수 (소법 §86)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징수를 면제하였으나, 2002.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세청
www.nts.go.kr

제2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세청
WWW.NTS.GO.KR

제 2 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배당소득의 종류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소법 §17①1)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34]으로 구분한다.

내국법인의 사원 또는 주주가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현금형태로 지급하는 현금배당과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주식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소법 §17①2)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

---

34) **비영리내국법인의 종류(법법 §2, 법령 §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과 그 중앙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演)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①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다. 의제배당 (소법 §17①3)

의제배당이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배당결의를 통하여 수령하는 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배당과 유사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으로, 세법에서는 이를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로 나가지 않고 사내로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로 환원되면 현금배당과 유사한 이익이 되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주주나 사원,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1) 의제배당 유형 (소법 §17②)

가) 주식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35]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35) **자본의 감소** : 일반적으로 감자라고 하며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한다. 실질적 감자는 자본의 감소로 발생한 자금을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자산규모가 줄어들지만, 주주들에게 보상 또는 환급한다는 점에서 유상감자라고 한다. 형식적 감자는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감자라고 한다. 자본감소의 방법으로는 주식금액 감소와 주식수 감소가 있다.

국세청 www.nts.go.kr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로 수령하는 대가 - 주식 취득가액

예규.

○ **원천세과-526, 2009. 6. 23.**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 2005. 9. 5.**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3, 2006. 6. 1.**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나) 퇴사·탈퇴 및 출자의 감소에 의한 의제배당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퇴사·탈퇴, 출자의 감소로 수령하는 대가 - 출자 취득가액

주식금액 감소 : 주주가 납입 주식금액의 일부를 포기하여 주주의 손실에서 주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절기)과 회사가 주식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식금액으로만 주식금액을 감소하여 새로 정하는 방법(환급)이 있다.

주식수 감소 :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으로 구분한다. 주식소각은 회사가 특정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 주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구분한다. 주식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병합하여 그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잉여금[36]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의 (1)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본통칙 17-0…3【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과세문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배당함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의 계산은 당해 주식의 처분에 의한 현금지급액과는 관계없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무상단주의 액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는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3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금액(법법 §17①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38]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

---

36) **잉여금** : 주식회사의 자기자본 중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한다.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자본잉여금 : 발생한 원천이 자본거래로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 : 발생한 원천이 손익거래로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서 생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부분을 말한다.

37) **자본준비금** :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 즉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이다. 상법에서는 자본준비금으로서 주식발행차익금(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그 초과액), 감자차익금, 감소한 자본금의 액수가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 및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합병차익금(합병에 의해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순재산액이 합병회사의 증가자본금·합병교부금을 초과하는 금액), 기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의 전액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인정되고 있다.

38) **무액면주식** : 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말한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로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와 진정무액면주의 두 가지가 있다. 기재식무액면주는 주권에 권면액의 기재는 없으나 정관에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다. 진정무액면주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39]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예규. 서면법규과-980, 2013. 9. 11.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상법」 제360조의7[40]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상법」 제360조의18[41]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자회사의 주식이전 계획에 의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이전 방식으로 설립된 바 있다.

---

39)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0) **상법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41) **상법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마)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42]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예규. 원천-621, 2011. 10. 5.

합병법인이 2010년 7월 1일 전의 합병으로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 제1항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전입한 후 2010년 7월 1일 이후 해당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바)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43]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42)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4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 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국세청
www.nts.go.kr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사) 예외적 규정

위 (가)~(바)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의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법인세법」 §17①1. 단서)

②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적격합병을 한 경우 합병차익(법법 §17①5 금액)에 달할 때까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 ⓒ, ⓓ의 금액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4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45]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44) **법인세법 제44조의 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45)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적격분할을 한 경우 분할차익(법법 §17①6 금액)에 달할 때까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 ⓒ, ⓓ의 금액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4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47]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등(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

46)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4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당해 자본금 또는 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times \frac{\text{「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text{자산재평가차액}}$$

라)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text{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액} - \text{주식 등 취득가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③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④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⑤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⑥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예규.

○ **소득**-875, 2010. 11. 19.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2584, 2008. 7. 29.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 **재소득**-612, 2012. 12. 5.
외국 모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모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해당 모회사의 사원권을 부여받은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직변경함에 따라 모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마) 합병에 인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 가액 - 주식 등 취득가액

예규. 소득-846, 2012. 11. 22.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바) 자기주식 보유법인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의 (1), (2)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국세청
www.nts.go.kr/kor

사)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분할되는 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분할대가(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로 취득하는 분할대가 - 주식 등 취득가액

예규. 재소득46073-162, 2000. 10. 5.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2)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 평가 (소령 §27)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가)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 및 ㉯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잉여금 자본전입(소법 §17②2) 및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자본전입(「소득세법」 §17②5)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식 등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세법」 §17②4) 또는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세법」 §17②6)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48]

48)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2항**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49] (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5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 「상법」 제462조의2[51]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 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예규. 법인46012-902, 2000.04.07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주식배당)의 발행금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49)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제2항**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50)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3항**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51)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국세청
www.nts.go.kr

나)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이 아닌 경우 :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text{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times \frac{\text{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text{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라) 단기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기소각주식 등(「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기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text{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frac{\text{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 합계}}{\text{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마)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1)의 가)(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나)(퇴사, 탈퇴), 라)(해산), 마)(합병), 사)(분할)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52]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5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소액주주】**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2)의 라)가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규.

○ **법규**-1314, 2013. 12.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다만, 소각되는 특정주식의 입증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3, 2013.11.29.)

○ **소득**-723, 2012. 9.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346, 1999.11.12.)를 참조하기 바람.

☞ 소득46011-346, 1999.11.1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③ 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예규.

○ **재소득**-253, 2007. 7. 19.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중 당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라.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소법 §17①4)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또는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에게 귀속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처분하고 그 금액을 해당 귀속자의 배당소득으로 본다.

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법 §17①5)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기구[53]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 분류한다. 집합투자기구는 통상 펀드라 지칭되며, 펀드는 법적형태에 따라 대부분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한다.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자산운용회사(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된다.

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는 수탁자에게 자산보관 및 운용을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을 운용하여 그에 따른 손익을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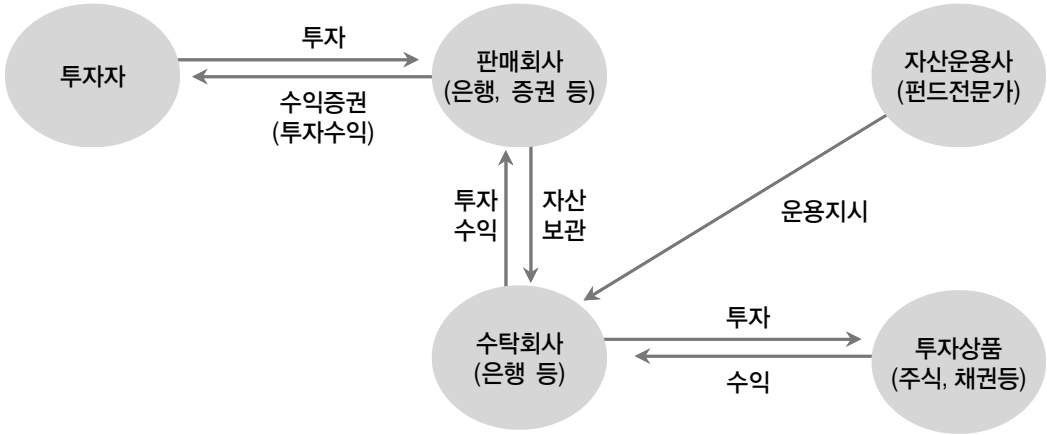

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 로서 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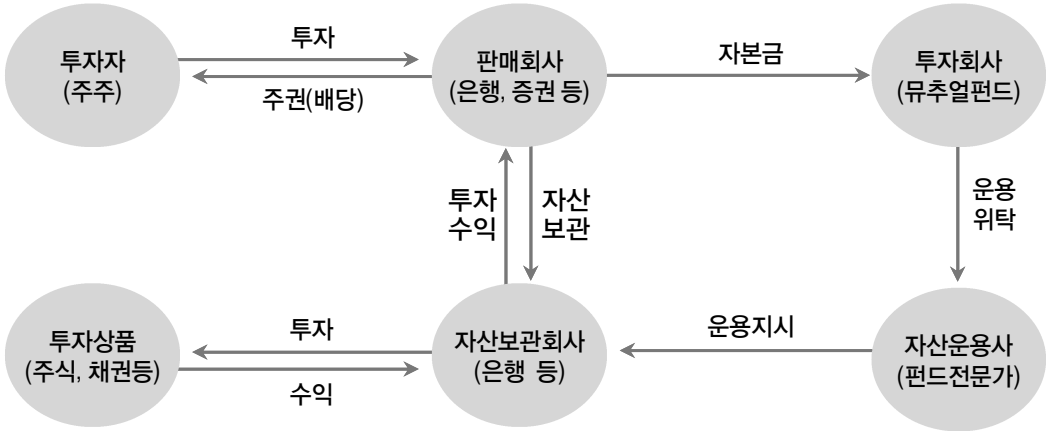

펀드의 구분

구분 기준	펀드명	펀드 설명
투자대상	증권펀드[54]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전통적인 펀드
	부동산펀드	부동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특별자산펀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특별자산(예술품, 선박, 유전, 광산,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혼합자산펀드	법령상 투자대상에 대한 최소투자비율이 없는 펀드
	단기금융펀드 (MMF)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설정지역	역내펀드	국내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설립된 국내펀드로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중국펀드, 베트남펀드 등)로 구분한다.
	역외펀드	외국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펀드로 외국(해외)펀드라고도 한다.
펀드구조	재간접펀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분산투자효과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모자형펀드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를 동시에 만든 펀드로 모펀드는 일반펀드와 같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에 투자를 한다.
	종류형펀드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로 보수와 수수료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통합 운용되어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하다.
	전환형펀드	다양한 자(子)펀드를 거느리고 있는 펀드로 하나의 펀드아래 성격이 서로 다른 여러개의 하위펀드가 구성되어 있고 사전에 정한 다수의 펀드간에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엄브렐러 펀드).

1)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소령 §26의2①)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아래의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아래의 요건 충족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54) **주된 투자대상의 편입비율에 따른 증권펀드의 구분**
주식형 : 집합투자규약상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
채권형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되 주식을 전혀 편입하지 않는 펀드
혼합형 : 주식 편입 최고 비율(50%)을 기준으로 혼합주식형과 혼합채권형으로 구분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55]에 따른 이익금이 영(0) 보다 적은 경우에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56]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57]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초과하는 금전의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 용어 설명
KOSPI200, KOSPI50 과 같은 특정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주식장점 + 펀드장점).

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재산의 평가이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한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58]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소득 구분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충족 여부 불문)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소득을 구분한다.

①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

---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59]
배당소득으로 과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한다.

① 투자자가 거주자등(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인이거나, 그 거주자등의 특수관계인[60]으로 구성된 경우

②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는 손익 (소령 §26의2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61]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

59)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기업에 대한 경영권의 참여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임면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가능한 투자를 의미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라는 운용제한이 있는 대신 운용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반 펀드와 달리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도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최소 출자금액 제한(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의 경우 1억원, 그 외의 자의 경우 3억원)이 있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그 제한이 없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목적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목적회사는 자기자본의 3배까지 차입도 가능하다.

60) **거주자의 특수관계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자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①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②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③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61)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

국세청
www.nts.go.kr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과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①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4) 집합투자증권 양도 (소령 §26의2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다)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62]

②「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등[63]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④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64](다만, 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

6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6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제2항**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8항**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5) 집합투자기구 보수·수수료 등 (소령 §26의2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6)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소칙 §14)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기준가격은 펀드의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펀드의 매수 및 매각(환매)시에 적용되며, 공고일 전일 펀드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총액을 수익증권 총좌수(투자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일 공고·게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공고·게시 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② ①외의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65]에서 매수 시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

65) **과세표준기준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국세청
www.nts.go.kr

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환매 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② ①외의 집합투자증권 :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나)의 ②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라)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 계산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주수 (환매 등이 발생하는 좌수·주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이 경우,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66]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이동평균법[67]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례. 결산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사례

A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00좌 보유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기준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해당 결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인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단, 각종 수수료 등은 발생하지 않음).

직직전 결산	직전 결산	해당 결산
1,700	1,600	1,800

☞ 직전 결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 1,600 − 1,700 = (−)100
좌당 과세표준 = 1,800 − 1,600 − 100(이월손실) = 100
과세표준 = 100 × 1,000좌 = 100,000

사례. 환매 등에 따라 이익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사례

B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1,000좌 보유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기준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해당 환매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으로 인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단, 각종 수수료 등은 발생하지 않음).

직직전 결산	직전 결산	해당 환매
2,200	2,400	
	⬇ (재투자 100)	
	2,300	2,500

☞ 직전 결산시 과세된 손익 = min[(2,400−2,200), 100(분배하는 금액 한도)] = 100
직전 결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 200 − 100 = 100
좌당 과세표준 = 2,500 − 2,300 + 100(이월이익) = 300
과세표준 = 300 × 1,000좌 = 300,000

66) **선입선출법** :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67) **이동평균법** :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세청
www.nts.go.kr

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소법 §17①5의2)

2018.1.1. 이후 지급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금 파생결합증권인 골드뱅킹 포함

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소법 §17①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주배당 (소법 §17①7)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68]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 (소법 §17①8)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①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

6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8호**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기본통칙 43-0…1【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차. 유형별 포괄과세제도에 의한 배당소득 (소법 §17①9)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위 가.~아. 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1) 유형별 포괄과세 종류

가) 파생결합증권[69] 등 관련 수익 (소령 §26의3①)

다음의 ①~③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또한, ③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본다.

---

69)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운용성과와는 무관하게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특정 주권, 금리,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기초자산으로는 주식(또는 주가지수)으로 한정된 주가연계증권이나 주식워런트증권과는 달리 주식 이외에 채권,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 등 매우 다양하다.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있다.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 :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권으로 주가연계증권(ELS)과 비슷하다. ELS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시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ELS가 3개월, 6개월 등 특정 기간 단위로 상환조건을 평가해 조건에 맞으면 사전에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나 ETN은 ETF처럼 추종하는 지수 수익률 만큼을 준다.

국세청 WWW.nts.go.kr

①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② 증권 또는 증서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주식대차거래 배당상당액 (소령 §26의3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2)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소칙 §14)

가) 상장지수증권의 이익분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② ①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70]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등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등(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을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② ①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다만, 상장지수증권(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②의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 가격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70)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

국세청 www.nts.go.kr

다)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 산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수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 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예규. 재소득 46073-41, 2003. 3. 24.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다.

카. 배당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소법 §17①10)

위 가.~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71]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71) **파생상품의 종류**

① **선도거래** : 계약당사자가 일정 시점에 특정한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가격, 수량, 품질 등)을 결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명시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조건에 따라 상품의 인수도 및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적인 계약이다. 전형적인 선도거래로 밭떼기를 들 수 있다.

② **선물거래** : 일정하게 조직화된 장소인 거래소에서 특정 상품을 현재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인수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로 선도거래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화된 거래소, 표준화된 계약조건, 청산소의 존재, 증거금 및 일일정산제도, 청산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③ **옵션** : 사전적 의미로는 선택권이라는 뜻으로 현재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기간 이내나 혹은 만기일에 해당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옵션거래는 이러한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고 하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④ **스왑** :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이다. **금리스왑**은 자산이나 부채의 금리조건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변동금리⇔ 고정금리), **통화스왑**은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의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하는 계약(달러화 부채 ⇔ 원화 부채)이다.

①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배당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②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배당소득 등)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③ 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 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소법 §17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1.1.부터 2010.12.31.까지의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72]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72)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국세청
www.nts.go.k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7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소득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배당소득 수입시기 (소령 §4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배당소득		수입시기
무기명주식의 이익 및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그 지급을 받은 날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잉여금 자본전입 결의일
	감자·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감소 결의일·퇴사일·탈퇴일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분할합병등기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1.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또는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73)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4.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소법 §131, 소령 §191)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특정일을 지급일로 하여 그 특정일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특정일을 지급일로 정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소득 수입시기를 지급한 날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한 날로 본다.

② 「법인세법」 제67조[74]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75]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의제배당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74)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예규. 원천세과-452, 2009. 2. 10.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때에 그 해당 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만기일을 연장하는 날에 그 해당 기간 발생소득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5. 원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제127항, 제154항, 제155항, 제155의2, 제155의3, 제157항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p.33~p.34) 내용 참고

가. 소액부징수 (소법 §86)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제3장

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세청
www.nts.go.kr/kor

제 3 장 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법인세 (법법 §73, 법령 §111)

가. 원천징수대상 소득

내국법인(나.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게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금액

법인의 경우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76]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규.

○ **법규소득2013-193, 2013.06.1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법인사업자 간에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익명조합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귀 신청 공동사업계약이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법 해석 관련 부서(법무부)로 문의하기 바람.

76)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7항**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서이** 46013-11093, 2003.06.03.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정리계획대로 상환 중 정리채권자와 약정하여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 46013-153, 2000.01.15.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나. 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령 §111①)

다음의 법인[「법인세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의 이자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77]

77)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2항 제1호~제28호**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12.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나)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 회사[78],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는 제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카)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파)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

거)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78) **투자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자산보유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투신, 증권, 은행신탁 등은 SPC를 설립해 이곳에 채권을 양도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다고 해서 특수목적회사라고 부른다. ABS의 상환이 완료되면 해산된다.

다. 원천징수제외 소득 (법법 §73②, 법령 §111②)

다음의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제외한다.

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③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④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운용법인[79]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80](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

7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국세청
www.nts.go.kr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

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0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 중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원천세과-134, 2010.02.10.**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매도시 원천징수 (법법 §73의2)

내국법인이 이자등(「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81]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한다.

"매도"에는 중개·알선과 아래 가.의 1)의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1) **채권등의 범위**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으로 다음의 증권 등을 포함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 등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금융회사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어음. 이 경우 금융회사등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되,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가. 채권등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법령 §113, §111⑤)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채권등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만,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채권등의 매도의 범위 (법령 §113③)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 (법령 §113②)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과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일반적인 보유기간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취득일이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법칙 §59③)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의 계산방법은 아래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82)]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 및 매도채권등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 ㉠의 기간에서 ㉡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

㉠ 채권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 채권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등의 취득수에 경과기간(발행일 또는 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기간과 당해 채권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

82)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제1항 제1호 원가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다) 보유기간 신고

해당 법인은 나)에서 적용할 방법을 아래의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선입선출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①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②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라) 적용이자율

이자율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 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로 한다.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국채) 및 제2항(통합발행)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 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상기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때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청구일로 한다.

마) 보유기간 입증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을 준용[제1장 1. 2) 나) (2) 참조]한다.

나. 집합투자증권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 특례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정한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이 해당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

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원천징수 (법령 §114의2)

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범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이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채권대차거래

나. 이자상당액 귀속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위 가.의 ①, ②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용한다.

다. 원천징수 및 환급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등(매수자 또는 차입자)이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인세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대차거래채권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4. 수입시기 (법령 §70)

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국세청
WWW.NTS.GO.KR

나.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 원천징수시기 (법령 §111⑥)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원천징수 위임 및 대리 (법법 §73④~⑥, 법법 §73의2③)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음의 법인에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①「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7.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법령 §116)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8.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령 §115)

가. 일반적인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

나. 반기별 납부 특례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반기별 납부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9. 소액부징수 (법법 §73, §73의2)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제4장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국세청
www.nts.go.kr

제 4 장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신탁(信託)의 사전적 의미는 "1. 믿고 맡김, 2.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이다.

신탁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 및 저축, 상속, 복잡한 사무관리, 부동산의 관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펀드도 신탁을 활용하여 펀드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역시 신탁을 통해 퇴직연금자산을 관리, 운용하고 있다.

「신탁법」에서의 신탁[83]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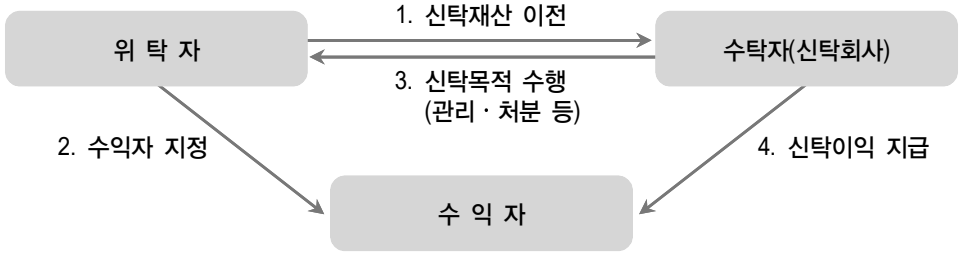

신탁과 펀드의 비교

구 분	신 탁	펀 드
운용주체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업무분야	신 탁 업	집합투자업
수탁재산	금전 및 재산	금 전
운용방법	개별운용	통합운용
운용근거	신탁계약	펀드규약
소득과세	발생소득 종류	배당소득

8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1. 신탁의 종류[84)]

가.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인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지시하고,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단독운용 신탁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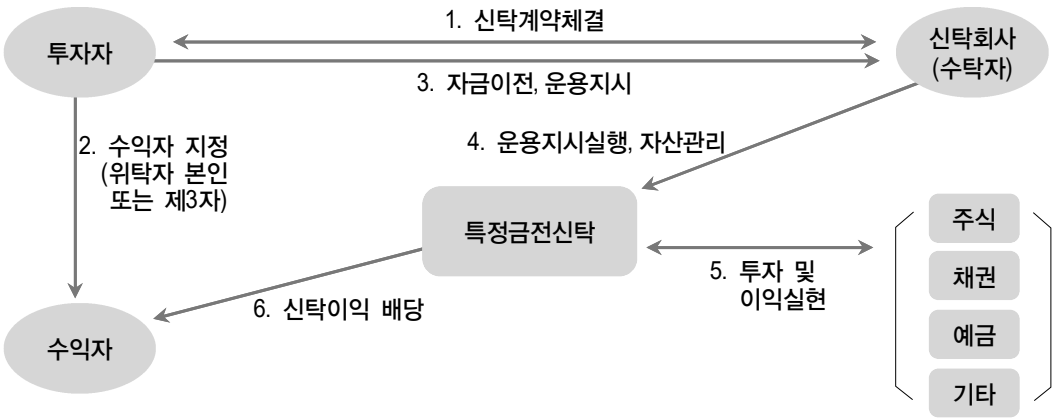

위탁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주식, 채권 등의 증권은 물론 부동산 등 모든 종류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그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나. 불특정금전신탁[85)]

불특정금전신탁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권한을 가지고 신탁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의 투자판단에 의해 신탁재산이 운용되는 상품이다.

---

84) 금융투자협회 "알기쉬운 신탁상품 이야기" 참조

8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04.1.4.)으로 불특정금전신탁이 간접투자로 분류되었고 '04.7월부터는 연금신탁상품을 제외한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수탁이 금지되었음

국세청
www.nts.go.kr

다. 연금신탁

연금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의 일종으로 기업의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기업 또는 기업과 그 종업원이 갹출하는 연금기금을 기업이 위탁자로서 신탁은행에 신탁한다. 수익자는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종업원과 그 유족 등의 연금 및 일시금의 수급권자이다.

라. 금전채권신탁

금전채권신탁은 금전채권 보유자가 신탁회사에 금전채권을 신탁하는 상품으로 위탁자는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86]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신탁회사는 금전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변제 받아 수익자(수익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한다.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변제 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탁회사는 당초 채권자인 위탁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 사무위임계약을 통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인 금전채권의 추심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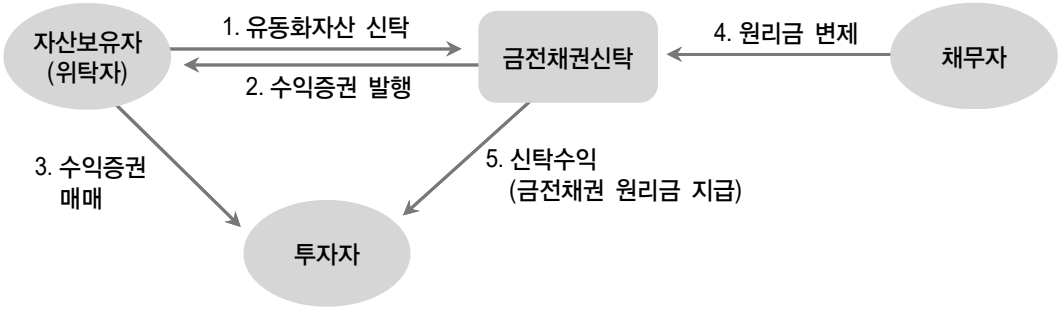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권은 채권회수가 확실한 우선수익권(1종 수익권)과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수익권(2종 수익권)으로 구분하며, 신탁회사는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후순위수익권은 위탁자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86) **수익증권** : 신탁재산인 금전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권리인 신탁의 수익권을 증권화한 것으로 주식이나 회사채처럼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유가증권이다.

수익권증서 : 신탁의 수익권을 증서화한 점에서 수익증권과 동일하지만, 수익권을 서면으로 표시한 권리에 불과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를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마.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이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을 신탁 받아서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및 개발하여 주는 신탁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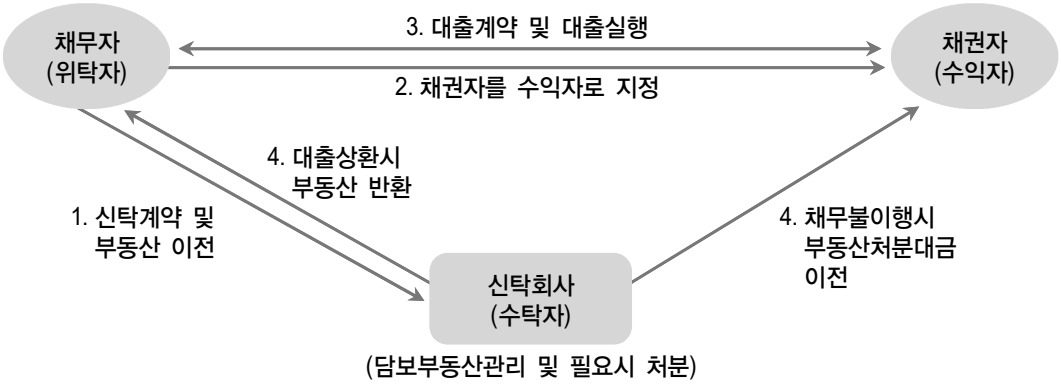

부동산신탁은 신탁목적 및 신탁회사의 업무범위에 따라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관리형 개발신탁, 분양관리신탁 등으로 구분된다[87].

바. 상속을 위한 신탁

상속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신탁상품으로는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이 있다.

---

87) **부동산신탁의 상품 종류**

① **담보신탁** :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위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상품.

② **관리신탁** :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 유지, 임대차관리 등의 제반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상품.

③ **처분신탁** :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 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상품.

④ **개발신탁** : 신탁재산인 토지 등의 부동산에 신탁회사가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 운용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상품.

⑤ **관리형 개발신탁** : 개발신탁처럼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개발사업을 진행하지만, 자금조달과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위탁자가 책임지는 상품.

⑥ **분양관리신탁** : 상가 등 건축물을 선분양 할 때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대리시키는 상품.

국세청
www.nts.go.kr

1) 유언신탁[88]

유언신탁이란 유언자(위탁자)가 유언서에 명시된 상속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유언자의 사망시 유언서의 내용대로 유증되도록 하는 신탁상품이다.

유언신탁은 유언에 따라 설정되어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효되는 사후(死後)신탁 형태로, 위탁자의 사망 이전에 신탁이 설정되어 위탁자의 생존 중에도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전(生前)신탁과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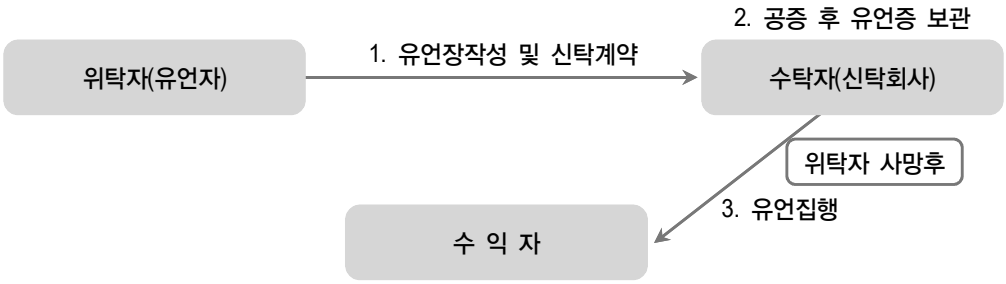

2) 유언대용신탁[89]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의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사망할 때에 배우자, 자녀, 제3자 등 수익자가 비로소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상품이다.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위탁자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의 수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유언신탁과 차이가 있다.

---

88)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이하 생략)

89)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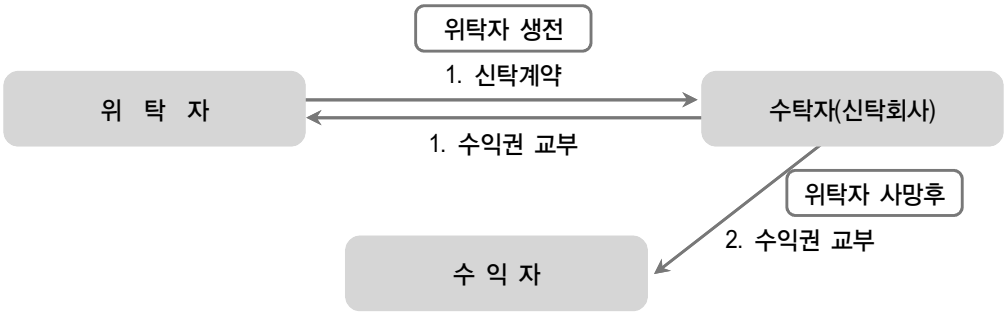

3) 수익자연속신탁[90]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신탁계약으로 수인의 수익자를 지정하면서, 수익자가 사망할 때 당해 수익권이 소멸하고 차순위자가 새로이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신탁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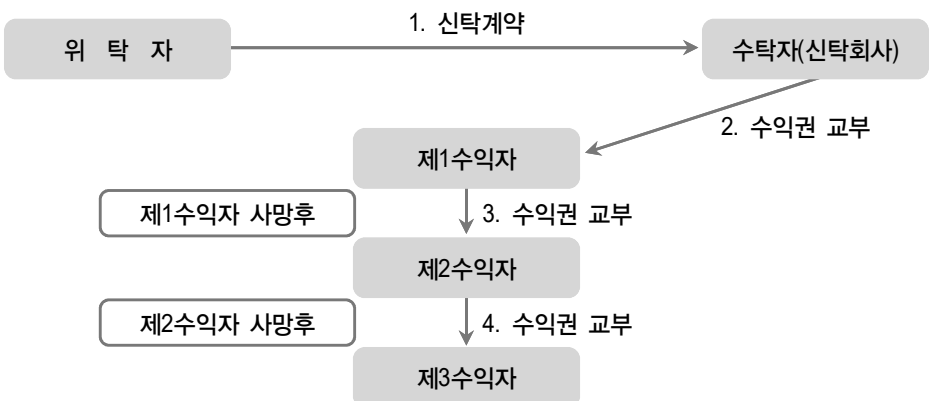

사. 공익사업을 위한 신탁

개인이나 기업 등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면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은 물론 위탁자의 뜻에 따라 공익사업까지 행하여 주는 상품으로 공익신탁이라 한다.

---

90)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2. 소득세법상 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가. 납세의무의 범위 (소법 §2의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나. 소득의 구분 (소법 §4②)

거주자의 소득을 구분할 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다. 원천징수시기 (소법 §155의2)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및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예규. 소득세과-63, 2016.02.19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지연손해금의 소득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급받은 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MMDA 예금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이자소득의 소득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각호에 따른 날로 하고 신탁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이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라. 원천징수의무자 특례 (소법 §127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상 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가. 납세의무의 범위 (법법 §5)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나. 원천징수시기 (법령 §111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말한다. 다만,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다. 수입시기 (법령 §70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에 귀속되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국세청
www.nts.go.kr/kor

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 원천징수의무자 특례 (법령 §111⑦, 법령 §113⑩)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별지 제68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말한다. 다만,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제5장

예탁제도와 원천징수

국세청
www.nts.go.kr/kor

제 5 장 예탁제도와 원천징수

1. 증권 예탁제도

가. 증권 등의 예탁

1) 의미 및 필요성

증권 등 예탁제도는 투자자(증권 등의 실제 소유자)가 예탁자(증권회사 등으로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91]에 증권 등을 예탁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이자 수령 등의 권리행사를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 등의 예탁은 투자자가 예탁증권에 대하여 갖는 각종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고 권리행사의 간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투자자의 예탁 (자본시장법 §310)

예탁자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③ 예탁증권등 수량의 증감원인
④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⑤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⑥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예탁자는 위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 해당 증권 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하며, 해당 증권 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 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자본시장법 §309)

예탁결제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②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③ 예탁증권등 수량의 증감원인
④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⑤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⑥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예탁자 또는 투자자가 증권 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발행인이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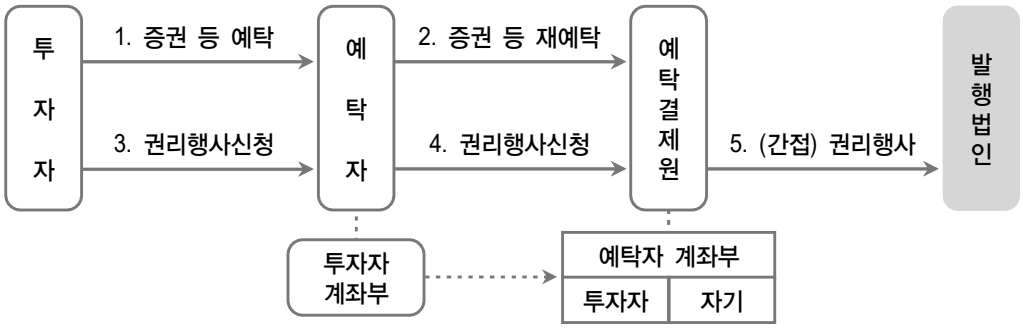

나. 예탁증권 등의 권리행사

1) 권리추정 등 (자본시장법 §311, §312)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 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증권 등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

2) 권리행사 (자본시장법 §314)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예탁증권 등의 발행인은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증권 등의 종류 및 발행 회차
② 증권 등의 권리의 종류・발생사유・내용 및 그 행사일정
③ 증권 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④ 자본시장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⑤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예탁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가. 예탁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92)93)]

1) 원리금지급명세 확정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보유분(자기분) 및 투자자보유분을 구분하여 예탁채권에 대한 원금・이자가 명시된 원리금 지급명세를 확정하고 해당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92)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3)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62조【원리금의 수령 및 지급】**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의 원리금(파생결합증권의 상환금 및 어음금액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급일이 도래하거나 추첨상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을 일괄하여 수령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원리금을 수령한 때에는 예탁자별 지분명세에 따라 그 수령일에 해당 예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탁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을 경과하여 원리금을 수령한 때에는 실제 수령한 날에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예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예탁결제원의 원리금 일괄 수령

예탁결제원은 예탁채권의 원리금(파생결합증권의 상환금 및 어음금액 등을 포함한다) 지급일이 도래하거나 추첨상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을 일괄하여 수령한다.

3) 예탁결제원의 원리금 지급

예탁결제원은 원리금을 수령한 때 예탁자별 지분명세에 따라 그 수령일에 해당 예탁자에게 해당 원리금을 지급한다. 또한 예탁자는 예탁자보유분을 제외한 원리금을 다시 투자자별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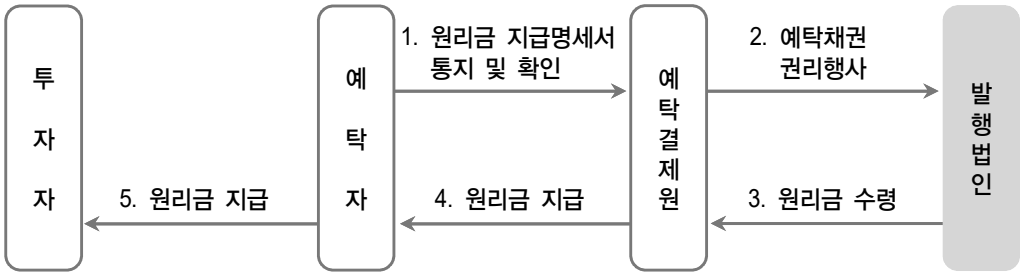

나. 예탁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대리·위임 (소령 §184의4, 법령 §111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국세청
www.nts.go.kr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 예탁자

2) 관련 유권해석

예탁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 경우 예탁자보유분에 대한 이자소득은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투자자보유분에 대한 이자소득은 예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예규.

○ **법규소득** 2010-107, 2010.05.26.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되는 것임

○ **원천세과**-482, 2010.06.16.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되는 것임

○ **법인** 46013-3358, 1999.08.27.
증권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 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증권예탁원이 선물회사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동 선물회사로부터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한다.

3. 예탁주식에 대한 원천징수

가.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

1) 실질주주명세의 통지[94]

예탁자는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의 예탁주식에 대하여 예탁자 자기소유분은 해당 예탁자를, 투자자 예탁분은 그 투자자를 실질주주로 하여 그 성명 및 주소,

94)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2조【실질주주명세의 통지】

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기재한 실질주주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예탁결제원은 통지받은 실질주주명세를 주식의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실질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통지[95)]

주식 발행인은 배당금의 지급 등 실질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실질주주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통지받은 실질주주명세를 기준으로 실질주주에게 권리를 배정한다.

3) 예탁결제원의 배당금 일괄 수령 및 지급

예탁결제원은 예탁주식의 배당금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일괄하여 수령하여, 예탁자별 지분명세에 따라 수령일에 해당 예탁자에게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다. 또한 예탁자는 예탁자보유분을 제외한 배당금을 다시 투자자별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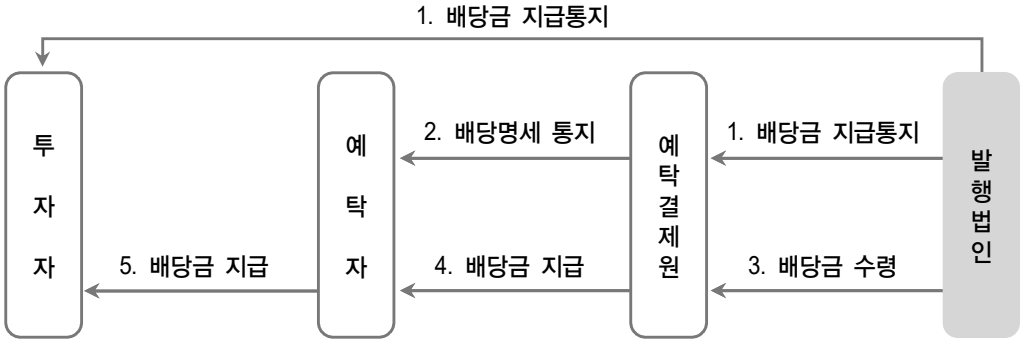

나. 예탁주식 배당주식에 대한 원천징수

예탁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 경우 예탁자보유분에 대한 배당소득은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투자자보유분에 대한 배당소득은 예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 예탁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나. 예탁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대리·위임' 부분 참조)

95)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5조【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 및 통지】

국세청
www.nts.go.kr/KOR

기본통칙 127-0…1【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

예규. 법무과-3454, 2005.08.26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실질주주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 동 징수부족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증권회사가 되는 것임.

국세청
www.nts.go.kr/kor

제6장 비거주자 등 금융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www.nts.go.kr/kor

제 6 장 비거주자 등 금융소득 원천징수

1. 납세의무자

가. 비거주자 (소법 §1의2, 소령 §2의2②)

비거주자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나. 외국법인 (법법 §2, 법령 §2②)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원천징수대상 소득 (소법 §119)

가.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제외한다)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②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나.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원천징수

가. 일반적인 원천징수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

나. 원천징수 특례 (소법 §156)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

②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비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가. 비거주자 (소법 §156의3, 소령 §207의3)

1) 채권등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채권등의 매수"에는 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은 제외한다.

2)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적용세율(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② 지급금액 중 ①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이 경우 ①의 세율이 ②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①의 세율이 ②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이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①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
www.nts.go.kr/kor

②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위 ①,②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4) 거주자 적용규정 준용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및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193조의2,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외국법인 (법법 §98의3, 법령 §138의3)

1) 채권등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채권등의 매수"에는 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은 제외한다.

2)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적용세율(「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② 지급금액중 ①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이 경우 ①의 세율이 ②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①의 세율이 ②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이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①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②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
www.nts.go.kr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위 ①,②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을 통하여 매수자등(매수자 또는 차입자)이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인세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을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4) 내국법인 적용규정 준용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원천징수세액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및 징수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원천징수 위임·대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비거주자 판정 요령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가입시, 매 3년마다, 만기·해약시의 각 시기별로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비거주자가 금융상품 가입시 ①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③ 거주자증명서 ④ 여권사본을 제출받아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매 3년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신분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상품 만기·해약시 가입자로부터 ①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③ 거주자증명서 ④ 여권사본을 제출받아 신분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 변경(2012.5.30.)

① 비거주자 판정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96]로 대체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의 경우는 비거주자 판정표 계속 적용)

②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금융상품 가입시, 매 3년마다, 만기·해약시 제출받음
(거주자증명서는 제출생략)

③ 2012.6.30. 이전에 제출받은 비거주자 판정표는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제출일로부터 3년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존 계좌 개설시 비거주자 판정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2012. 7. 1. 부터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함

96) **비거주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
외국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 서식

국세청
www.nts.go.kr/kor

제7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특례

국세청
www.nts.go.kr/kor

제 7 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특례

1.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면제 (조특법 §21)

다음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③ 다음의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 사업에 한한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나.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특법 §21의2)

1)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2) 감면세액의 추징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을 해지한 경우 :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② 예금을 인출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증명서류의 제출

비거주자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

4) 계약 갱신시 간주규정

비거주자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예금이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조특법 §29)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12.31.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14% 세율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97]을 말한다.

라.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조특법 §66)

1)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98]의 조합원(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9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9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①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③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①,②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

2) 배당소득의 계산

위 1)에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①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left(\frac{\text{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text{총 소득금액}} \right)$$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left(\frac{\text{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text{총 소득금액}} \right)$$

③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①,②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left(1 - \frac{\text{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text{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text{총 소득금액}} \right)$$

3) 제출서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12.31.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마. 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조특법 §67)

1)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영어조합법인[99]의 조합원(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1.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제출서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3)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12.31.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바.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조특법 §68)

1)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100]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배당소득의 계산

위 1)에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left(\frac{\text{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text{총 소득금액}} \right)$$

10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국세청 www.nts.go.kr

②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text{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left(\frac{\text{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text{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text{총 소득금액}} \right)$$

3) 제출서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개인연금저축 (조특법 §86, 2013.1.1. 삭제)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개인연금저축에 포함되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한 보험(조특칙§33)

「조세감면규제법」 제4744호(1994. 3. 24.) 시행일 전에 「조감법」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계약변경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계약

내용이 동법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변경일에 동법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때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보험을 말한다.

①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변경일 현재 만 20세 이상일 것
②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③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을 것

1) 개인연금저축의 요건

가) 가입대상 및 저축 불입기간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이고,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

가입자의 출생연도	불 입 기 간	
	1994년 가입시	1995년 가입시
1949년	10년 이상	9년 이상
1948년	9년 이상	8년 이상
1947년	8년 이상	7년 이상
1946년	7년 이상	6년 이상
1945년	6년 이상	5년 이상
1944년 이전	5년 이상	5년 이상

나) 불입금액의 한도

가입자가 가입한 모든 개인연금저축의 합계액이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한다.

다) 연금수령기간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2) 소득공제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3) 해지가산세 추징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해지추징세액으로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추징(연간 7만 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③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② 사망・해외이주
③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예규.

○ **원천-879, 2009. 10. 2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예규.

○ **원천**-114, 2009. 01. 09.
개인연금(연금저축)가입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 '저축자의 퇴직'에 규정하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1483, 2008. 07. 23.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845, 2008. 06.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이 고용이 승계되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특별해지사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편, 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로서 당해 저축자가 위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921, 2006. 07. 06.
종업원이 임원으로 추임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서면1팀**-1105, 2005. 09. 21.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6, 2010. 01. 0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임

국세청
www.nts.go.kr

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특법 §86의3)

☞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101]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1) 소득공제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의 수입시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구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단, 2015.12.31. 이전 가입분에 한함).

아래 ①~⑤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특별해지사유(⑥~⑩)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특별해지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

1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①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② 소기업·소상공인이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③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④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⑥ 해외이주 ⑦ 천재·지변의 발생 ⑧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⑨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4) 해지가산세 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해지가산세와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해지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장기주택마련저축 (조특법 §87)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www.nts.go.kr

1) 가입 요건

①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102]의 세대주 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103]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104]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 것

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③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2) 소득공제

2010.1.1. 개정법률(제9921호)[105] 시행 전에 종전의 「조특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하고, 2010.1.1.~2012.12.31. 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한다.

3) 감면세액의 추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

102)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103) 2010.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104)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05) 조특법 부칙 제73조(2010.1.1. 법률 제9921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 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또한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저축 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확인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저축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저축가입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저축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면받은 세액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저축취급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저축취급 금융기관의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여부를 통보한다.

예규.

○ **서면법규과-**68, 2013. 1. 24.
2012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월 납입액을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계약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원천세과-**3, 2012. 1. 3.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예금자보호법」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일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1팀-**1350, 2006. 9. 26.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규정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축가입자가 가입당시 거래약관에 의해 저축계약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동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242, 2004. 6. 25.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참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개정연혁

가입시기	가입요건
1999년~2003년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2004. 1.1.~2006.2.8.	세대주로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한 세대주
2006.2.9.~2007.12.31.	세대주로서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주택 소유한 세대주
2008.1.1.~2009.2.3.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주택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2.4.~2009.12.3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주택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부부 중 1명만 가입 가능(조특령§81⑩, 2009.2.4.개정)
2010년~2012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부부 중 1명만 가입 가능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특법 §87의2)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12.31.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농어민이 사망한 때
②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③ 천재·지변
④ 농어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⑤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⑥ 병충해·설해·풍해·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세청
www.nts.go.kr/kor

참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연혁

- 대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상품개요
    - 가입대상 : 일정요건 이하의 저소득 농어민
    - 금리 : 기본금익(5.5%)+장려금리(1.5~9.6%)
    - 납입한도 : 최대 연 144만원
- 적용기한
  - 2009.12.31.→ 2011.12.31. 가입분까지

  ※ 일몰기한 연장
  · 2014.12.31. 가입분까지(2011.12.31. 개정)
  · 2017.12.31. 가입분까지(2014.12.23. 개정)
  · 2020.12.31. 가입분까지 (2017.12.19.개정)

카.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조특법 §87의5)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106]로부터 2015. 12.31.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하며, 액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14%로 분리과세[107]한다.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

106) 선박투자회사 :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107) 2014.1.1.~2015.12.31.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2억원 이하 14% 분리과세, 2억원 초과 14% 종합과세
2011.1.1.~2013.12.31. 1억원 이하 5% 분리과세,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2006.1.1.~2010.12.31. 3억원 이하 5% 분리과세, 3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2004.1.1.~2005.12.31. 3억원 이하 비과세, 3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 대상소득과 종합과세 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규. 소득-4751, 2008. 12. 18.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당해 법인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당해 의제배당은 같은 규정의 과세특례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참고.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연혁

내용	적용대상
▪ 분리과세(15%) -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박투자회사가 보유한 선박의 매매·평가로 발생하는 소득 배당소득에서 제외) ▪ 적용기한 : 2005.12.31.까지 지급분	2003.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 비과세 - 한도 : 투자원금 3억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 ▪ 분리과세(15%) - 투자원금 3억원 초과분 배당소득 ▪ 적용기한 : 2008.12.31.까지 지급분 ▪ 원천징수방법 - 상장·등록회사 : 증권예탁원 통해 해당 증권사에 통보하여 원천징수 - 기타 :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구분하여 원천징수	2004.1.1. 이후 발생하여지급받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의무자(위탁 여부에 따라 구분) 관련 개정 -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 증권예탁원의 통보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2005.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 분리과세 - 액면가액 3억원 이하 : 5% - 액면가액 3억원 초과 : 14% ▪ 적용기한: 2010.12.31.까지 지급분	2009.1.1. 이후 최초로 지급 받는 배당소득

국세청
www.nts.go.kr

내용	적용대상
▪ 분리과세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 5% - 액면가액 1억원 초과 : 14% ▪ 적용기한 : 2013.12.31.까지 지급분	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 분리과세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 14% ▪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지급분	2014.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 (조특법 §87의6)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108]으로부터 2016.12.31.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로 분리과세하며,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투자매매업자별·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직접 또는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참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연혁

내용	적용대상
▪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 대상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 요건 :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주택 - 세제지원 : 배당소득세 감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 5% ·액면가액 1억원 초과 :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 : 2012.12.31.까지 지급분	20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 과세특례 기준 조정 - 액면가액 3억원 이하 : 5% - 액면가액 3억원 초과 :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지급분	2013.1.1.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 과세특례 기준 조정 및 한도 규정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 5% -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 : 2016.12.31.까지 지급분	2015.1.1.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등 개정 - 대상 : 기준시가 6억원, 149㎡ 이하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의 임대주택에 50% 이상 투자 -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큰 경우(할증발행)는 발행가액 기준으로 계산 ▪ 적용기한 : 2018.12.31.까지 지급분	2017.2.7.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파. 비과세 종합저축 (조특법 §88의2)

1) 가입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19.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① 65세[109] 이상인 거주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⑥「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2) 비과세종합저축 요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음의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입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②「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③「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④「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⑤「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⑥「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109) **조특법 부칙 제12853호(2014.12.23.)**
제5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1세"로 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2세"로 보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3세"로 보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4세"로 본다.

참고.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연혁

내용	적용대상
▪ 노인·장애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신설 - 가입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 저축한도 : 1인당 2천만원 - 요건 : 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 모든 저축 - 저축대상 금융기관 : 모든 금융기관	2000.10.21. 이후 최초가입한 저축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2001.1.1. 이후 최초 가입 저축부터 해당)
▪ 가입대상 및 한도 조정 - 가입대상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 저축한도 : 1인당 3천만원	2004.7.26.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 가입대상 확대 - 가입대상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005.1.1. 이후 최초 가입 분부터 적용
▪ 가입대상 연령 조정 및 일몰기한 신설 - 가입대상 : 60세 이상 노인(여성의 경우 5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적용기한 : 2008.12.31.까지 가입	2007.1.1. 이후 최초 가입 분부터 적용
▪ 가입대상 연령 조정 및 일몰기한 연장 - 가입대상 : 60세 이상 노인(여성의 경우에도 60세로 동일),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가입	2009.1.1. 이후 최초 가입 및 계약기간 연장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 연장 - 2014.12.31.까지 가입	2012.1.1. 이후 최초 가입 분부터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 변경 - 대상 :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비과세한도 : 5천만원*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포함 ▪ 세금우대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 적용기한 : 2019.12.31.까지 가입	2015.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적용기한 : 2020.12.31.까지 가입	2020.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kor

하. 우리사주조합원 및 농·수협 근로자 배당소득 (조특법 §88의4)

1)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가) 소득공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우리사주조합기금 발생소득 비과세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110]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비과세 (조특법 §88의4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①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일 것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우리사주조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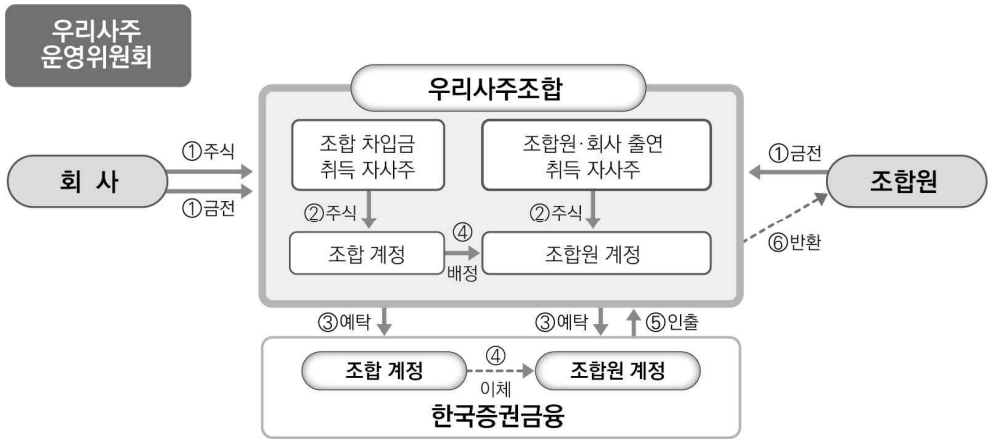

2) 농협·수협 근로자 배당소득 (조특법 §88의4⑩, 2013.1.1.시행)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②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국세청
www.nts.go.kr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3) 소액주주 요건 (소령 §38③)

소액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및 농·수협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해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규. 서면1팀-343, 2006.3.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규정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같은법 제8항 제3호의 요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을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우리 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동 규정 괄호의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조합통합계정과 개인별 계정이 있는 경우 조합통합계정의 개인별 주식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을 합하여 액면가액 1,800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이하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참고.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출연금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
조특법 §88조의4①,⑤,⑥</td><td>○ 400만원 근로소득공제(벤처기업 등 조합원 1,500만원) →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과세이연)
<table>
<tr><th>보유기간</th><th>과세비율</th></tr>
<tr><td>2년 미만</td><td>100%</td></tr>
<tr><td>2년~4년 미만</td><td>50%</td></tr>
<tr><td>4년 이상</td><td>25%</td></tr>
<tr><td>6년 이상(중소기업)</td><td>100% 비과세</td></tr>
</table>
※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경과기간</td></tr>
<tr><td>주주 및 법인출연 등 무상취득 주식 과세이연
조특법 §88조의4③,④,⑤</td><td>○ 주주출연 : 인출시 과세
○ 법인출연
- Max[직전 총급여의 20%, 500만원] 이내 : 인출시 과세
- Max[직전 총급여의 20%, 500만원] 초과분 : 배정시 과세</td></tr>
<tr><td>배당소득 비과세
조특법 §88조의4⑨
소법 시행령 §38조③</td><td>○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예탁 중으로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인 경우
* Min[발행주식 총액의 1%, 3억원]</td></tr>
<tr><td>인정이자 비과세
법법 시행규칙 §44</td><td>○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제외
- 이자금액 회사 익금 불산입
- 근로소득(인정상여) 배제</td></tr>
</table>

국세청
www.nts.go.kr/kor

구분	내용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 비과세 상증법 §46 조특법 §88조의4⑧	○ 증여세 비과세 ○ 근로소득 - 출자금액 400만원(벤처기업 등 조합원 1,500만원) 이하 : 비과세 - 출자금액 400만원(벤처기업 등 조합원 1,500만원) 초과분 : 취득가액이 기준가액*보다 낮은 경우 배정시점 과세 * 시가의 70%
양도소득 비과세 조특법 §88조의4⑭	○ 1년 이상 예탁 주식을 퇴직 사유로 인출하여 조합에 양도시 액면가액 1,800만원까지 비과세 - 양도차액 3,000만원 초과분 과세

거. 조합 등 출자금 (조특법 §88의5)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중 2020.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은 다음의 세율에 따라 분리과세한다.

① 2021.1.1.부터 2021.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 5%
② 2022.1.1.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⑤「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예규. 서면법규과-898, 2013.08.19.

○ **원천-260, 2012.5.14.**
우선출자자[111]가 출자한 출자금은 법 제88조의 5와 영 제82조의 5에서 규정한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1.1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임

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특법 §89)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2014.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하고,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 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채권저축[112]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111) **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2【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56조제3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5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1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국세청
www.nts.go.kr

적용을 신청할 것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원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자 : 1명당 3천만원

2)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납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 총액을 계산한다.

2008. 12. 26. 법률 부칙 제14조

제14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가입금액 한도 변경 : 2천만원→1천만원(20세 이상), 6천만원→3천만원(생계형저축 요건해당자)

3) 감면세액의 추징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9%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은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예규.

○ **원천**-195, 2013.04.01.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원천**-663, 2012.11.30.(**재소득**-594, 2012.11.27.)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원천**-1064, 2009.12.28.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계약기간 1년 단위의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하여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기간(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457, 2009.02.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계좌에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예탁되어 그 채권에서 발생하여 지급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이 출금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더. 조합 등 예탁금 (조특법 §89의3)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07.1.1.부터 2020.12.31.까지 비과세, 2021.1.1.부터 2021.12.31.까지 5%로 분리과세, 2022.1.1. 이후는 9%로 분리과세 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합 등 예탁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조합 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예규.

○ **원천-704, 2011.11.02.**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거주자가 예탁한 예탁금이 해당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며 20세 이상인 거주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해당 예탁금(상속인의 기존 예탁금과 상속받은 예탁금을 더하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상속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원천-391, 2009.05.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하는 것임

러.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1의2)

☞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투자회사의 일부손익 과세제외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①과 ②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②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③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 집합투자기구 등의 국외주식 매매·평가손익 과세제외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113]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주식의 매매·평가손익 범위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113) **조특법 부칙 제9921호(2010.1.1.)**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국세청
www.nts.go.kr

나)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의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과 ③에 해당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말한다.

①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② 「증권거래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114]
   ㉠ ①,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3) 배당소득 제외금액 산출

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

114) **주식예탁증서**(DR, Depository Receipt) :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이다. 즉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언어·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 주고, 이러한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유통시키는데 이를 주식예탁증서(DR)라 한다. 기업이 DR을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여의치 않은 기업에게 DR 발행이 적격이며, 건실한 기업도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DR를 발행한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ADR, 유럽에서 발행되는 EDR,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GDR 등이 있다.

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유가증권 양도차익 구분경리 등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소득 (조특법 §91의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6.12.31.까지 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하며,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 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 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가 위탁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규. 법규소득2009-7, 2009.01.31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버.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조특법 §91의12)

1)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 국적동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가입자 전원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③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 경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도 국내자산에만 투자하여야 한다.

2) 감면세액의 추징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을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계약체결일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 결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②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로서 같은 결산일에 배분받은 이익에 대하여 1)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1)에 따른 세액과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국세청
www.nts.go.kr/kor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①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입시 제출서류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외국민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른 거주여권의 사본

②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다음의 서류.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2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다음의 서류 대신 같은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 재형저축 (조특법 §91의14)

1)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2015.12.31.까지 가입한 재형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입 요건

①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이 경우, 적립식 저축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라 설립·설정된 자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는 저축을 포함한다.

③ 재형저축 계약기간이 7년일 것

국세청 www.nts.go.kr

④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감면세액의 추징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위 2) ① ㉮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 위 2) ① ㉯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및 ㉯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

② ①외의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거주자로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유로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저축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재형저축의 가입요건 확인제도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저축가입 요건 및 위 3) 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저축 가입연도(저축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다.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받은 세액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저축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저축취급 금융기관의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

국세청
www.nts.go.kr

참고. 재형저축 비과세 개요 및 연혁

내용	적용대상
▪ 비과세 신설 - 가입대상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운용대상 :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 세제지원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 의무가입기간 : 만기 7년* *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추가 연장 가능 - 사후관리 :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 가입절차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 2014.2.21. 이후 최초 가입분부터 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도 가입 가능) - 소득확인 : 국세청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 ▪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가입	2013.1.1. 이후 신설된 재형저축 가입 분부터 적용 (2014.1.1. 이후 미납 저축금 납입 분부터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경과 전에는 미납 저축금 납입 허용)
▪ 의무가입기간 개정 - 가입대상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 5백만원 이하 사업자 - 운용대상 :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 세제지원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분기별 3백만원) - 의무가입기간 · 서민형 : 3년 ①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② 중소기업 재직 고졸 청년 근로자(15~29세) · 기타 : 만기 7년 - 사후관리 :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 가입절차 :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 소득확인 : 국세청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 ▪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가입	2015.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어.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조특법 §91의15)

거주자가 비우량채권[115]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116]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117]에 2016.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3천만원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비우량채권 및 코넥스 상장주식(이하 비우량채권등) 해당 여부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비우량채권등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 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비우량채권등으로 본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퇴직

---

115) **비우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을 말한다.

116) **코넥스 상장주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말한다.

11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국세청
www.nts.go.kr/kor

③ 사업장의 폐업

④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참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과세특례 연혁

내용
▪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등 분리과세 신설(2014.1.1. 이후 설정 분부터 적용) - 펀드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우량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 내용 :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펀드 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하 - 분리과세 요건 · 투자대상 : BBB+ 이하인 사채권(비우량채), 코넥스 상장주식 · 펀드요건 : ①~③ 모두 충족(①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주식 30% 이상 편입, ② 국내 채권(①포함)에 60% 이상 투자, ③국내 자산에만 투자) -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 공포일(2015.2.3.) 이후 전자단기사채 편입분부터 적용 - 편입대상 채권 : BBB+ 이하(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 30% 이상 편입,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 - 펀드 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하 - 내용 :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가입분
▪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 2016.2.5. 이후 신규가입자가 있는 하이일드펀드로서 2016.4.1. 이후 평균 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 펀드요건 : 비우량채권(BBB+ 이하)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 국내 자산에만 투자 - 세제지원 : 인별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적용기한 : 2016.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연장(2016.12.20.개정) - 2017.12.31.까지 가입분

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특법 §91의16)

1)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 납입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공제 배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해지"란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3) 해지 추징세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추징세액(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처.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 (조특법 §91의17)

1)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 과세제외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7.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전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전용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전용저축을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② 거주자 1명당 전용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전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2) 전용저축 및 해외상장주식 요건

가) 전용저축 요건

전용저축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한다.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 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제1항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만을 위한 저축으로서 저축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나) 해외상장주식 요건

해외상장주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①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② 외국증권시장(「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일 것

국세청
WWW.NTS.GO.KR

다) 주식예탁증서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위 가), 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①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②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해외상장주식 보유비율 요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이하 전용집합투자기구)는 해외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매일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최저보유의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100분의 60 이상인 것으로 본다.

①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
②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③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1개월
④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전용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⑤ 전용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4) 납입금액 계산

전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이란 각 전용저축의 원금(각 전용저축별 납입원금의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한도액을 말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투자기간(~2017.12.31) 까지 : 각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에서 인출하지 아니하고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의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② 투자기간(~2017.12.31) 경과 후 : 각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며, 전용저축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인출되더라도 해당 저축 원금의 인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 ①,②를 적용할 때 전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금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특법 §91의18)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1) 과세특례

가) 이자소득등 과세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한다.

①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비과세금액 상향 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 4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한다.

국세청
www.nts.go.kr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③ 가)와 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위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탁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신탁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격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①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②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업자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

③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

㉮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계약기간 5년

⑤ 1명당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다만,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 투자상품은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3) 이자소득등 합계액 계산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2) 가) ③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그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순서에 따른 소득에서 손실(「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2) 가) ③ 각 목의 재산 중 손실이 발생한 재산과 동일한 종류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②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③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감면세액의 추징

신탁업자 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 1) 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② ① 외의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유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신탁업자 등이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 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확인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신탁업자 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 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탁업자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신탁업자 등의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해당 신탁업자 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탁업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 등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원천징수시기 특례

신탁업자 등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참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별 상품개요

【2016년~2017년 가입】

구분	일반형		서민형
	일반	농어민	
계약기간	5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의무가입기간	5년*		3년
가입대상	직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비과세 소득만 있는자 제외)	농민 또는 어민인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비과세한도	이자·배당소득 200만원		이자·배당소득 25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 청년(15~29세, 병역기간 6년까지 제외) 또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금 수급자는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적용

【2018년 가입】

구분	일반형	농어민형	서민형
계약기간	5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의무가입기간	5년	3년	
가입대상	• 직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비과세 소득만 있는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근로, 사업소득 제외) 3천5백만원 초과 농어민(일반형)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근로, 사업소득 제외) 3천5백만원 이하 농어민 ※ 일반형·서민형 미해당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비과세한도	이자·배당소득 200만원	이자·배당소득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2019년 이후 가입】

구분	일반형	농어민형	서민형
계약기간	5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의무가입기간	5년	3년	
가입대상	• 직전 3개연도 또는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비과세 소득만 있는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근로, 사업소득 제외) 3천5백만원 초과 농어민(일반형)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근로, 사업소득 제외) 3천5백만원 이하 농어민 ※ 일반형·서민형 미해당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비과세한도	이자·배당소득 200만원	이자·배당소득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특법 §87, 조특령 §81)

1) 과세특례

가) 이자소득 과세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① 가입 당시 19~34세 이하[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기간(6년 한도)을 빼고 계산한 연령]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나) 가입 및 비과세 적용을 위한 서류제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 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3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및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저축 가입후 2년 이내에 제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국세청
www.nts.go.kr

2) 가입요건 확인제도

가)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①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② 국토부장관은 가입자가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지를 확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 세액 추징

나)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국세청장은 가입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 세액 추징

3) 감면세액의 추징

저축 취급기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저축 취급기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때까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

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①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할 것
②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고, 가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

퍼. 장병내일준비적금 (조특법 §91의19, 조특령 §93의5)

1) 과세특례

가) 이자소득 과세특례

가입 당시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나) 현역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① 현역병
② 사회복무요원
③ 상근예비역
④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①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병무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
②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

국세청
www.nts.go.kr/kor

라) 가입 및 비과세 적용을 위한 서류제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발급기관 : 국방부, 병무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3) 감면세액의 추징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금융회사가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상 특례

가. 공익신 탁의 이익 (소법 §12)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소법 §129②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2002.1.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4%로 분리과세한다.

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 (소법 §14③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한다.

라. 비실명 금융소득 분리과세 (소법 §129②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42%로 분리과세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마. 금융실명법에 의한 분리과세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융소득 분리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5%))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비실명자산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가 비실명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되어 그 부족액을 실소유자가 납부(소법 §155조의7, 2019.1.1.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특정채권의 범위

"특정채권"이란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1997. 12. 31.이후부터 1998. 12. 31.까지 발행된 다음의 채권을 말한다.

특정채권 종류	발 행 일	만 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 12. 31.~1998. 3. 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 30.~1998. 7. 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 10. 31.	5년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 11. 9.~1998. 12. 29.	5년

국세청
www.nts.go.kr/kor

예규.

○ **금융위 은행과-**1515('17.11.15.)

-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은 동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됩니다.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동 사실이 밝혀진 시점 이전의 이자·배당소득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기재부 금융세제과-**266('17.11.21.)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은행과-1515, '17.11.15)에 따라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이 동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날부터 10년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바.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 (소법 §14③6)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을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한다.

국세청
www.nts.go.kr

제8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국세청
www.nts.go.kr/kor

제 8 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 (소법 §129①)

가. 이자소득

1)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P2P 대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다.

3) 기타 이자소득

위 1)~3) 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로 원천징수한다.

나. 배당소득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로 원천징수한다.

2) 기타 배당소득

1) 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로 원천징수한다.

다. 외국 원천징수세액 (소령 §129④)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및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에 대해서 아래의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②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예규. 원천세과-485, 2012.09.18.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14%(원천징수세액)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 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과세된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한 세액(원천징수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일본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www.nts.go.kr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변천

구 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채권 등 이자 (개인)	일반이자		개인	법인 (투자신탁이익)
		개인	법인		
1990.12.31. 이전	-	10%	10%	10%	10%
1991.1.1. 이후	-	20%	20%	25%	20%
1996.1.1. 이후	○ 장기채권 - 5년~10년 : 30% - 10년 이상 : 25% ○ 장기저축 - 5년이상 : 30%	15%	20%	15%	20%
1998.1.1. 이 후	-	20% (표지어음 등으로서 '97.12.31.이전 발생분 중 수입시기가 '98.1.1.이후 도래하는 표지어음이자 : 15%)	20%	20%	20%
1998.10.1. 이 후	-	2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98.10.1.이후 발행분부터 적용)	22%	20%	22%
2000.1.1. 이 후	-	20% ('01.1.1.이후 발생하는 것으로서 '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 포함 ⇨ 표지어음 등 해당)	20%	20%	20%
2001.1.1. 이 후	30%	15% (법인은 01.7.1.부터 적용)		15%	15% (01.7.1부터)
2005.1.1. 이 후	30% (17.12.31.까지 발생분)	14%		14%	14%

(참고) ①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세율 : 25%
② 법인의 기타소득 : '89~'94년까지 25% 원천징수
③ 장기채권이자 선택적 분리과세(30%)(18.1.1. 이후 발생분부터 폐지)

2. 실지명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원천징수세율 (소법 §129②)

①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로 원천징수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42%로 원천징수한다.

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0%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5%)로 원천징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세율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법령	소득 종류	조세특례 요건	세 율
조특법 §21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 비거주자,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수수료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수수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수수료	비과세
조특법 §21의2	• 비거주자등의 정기 외화예금 이자소득	• 2015.12.31.까지 가입 - 비거주자,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제외)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조특법 §29	•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	• 2014.12.31.까지 발행 - 사업시행자, 유동화전문회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 - 발행일~최종상환일까지 7년이상	분리과세 14%
조특법 §66②	•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 2021.12.31.까지 배당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1,200만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국세청
www.nts.go.kr

근거법령	소득 종류	조세특례 요건	세 율
조특법 §66③	•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 2021.12.31.까지 배당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외의 소득	분리과세 5%
조특법 §67②	• 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 2021.12.31.까지 배당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 배당소득 중 1,200만원 이하	비과세
조특법 §67③		• 2021.12.31.까지 배당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외의 소득	분리과세 5%
조특법 §68④	•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 2021.12.31.까지 배당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14%
조특법 §86②	• 개인연금저축 이자소득(2013.1.1. 삭제)	• 2000.12.31.까지 가입 - 만 20세 이상 개인 - 불입기간 10년, 분기별 300만원 한도 -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중도해지시 이자소득 과세)	비과세
조특법 §87①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소득	• 2012.12. 31.까지 가입 - 만 18세 이상 거주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소유 세대의 세대주 - 계약기간 7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한도이내 납입	비과세
조특법 §87③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 2012.12. 31.까지 가입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세~34세)으로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계약기간 2년 이상 - 500만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
조특법 §87의2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	• 2020.12.31까지 가입 - 농어민 -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이내 납입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특정 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가입일부터 1년 이후에 한함)로 저축을 해지	비과세

근거법령	소득 종류	조세특례 요건	세 율
조특법 §87의5②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 2015.12.31.까지 배당 - 거주자 -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2억원 초과(종합과세)	분리과세 9% 14%
조특법 §87의6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 2016.12.31.까지 배당 - 거주자 - 투자기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 투자기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 투자기구별 액면가액 2억원 초과(종합과세)	분리과세 5% 14%
조특법 §88의2	• 비과세 종합저축	• 2020.12.31.까지 가입 •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유족, 가족포함),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천만원 한도 이내 납입	비과세
조특법 §88의4⑨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배당소득	• 예탁일로부터 1년 이상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 - 소액주주 -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	비과세
조특법 §88의4⑩	• 농협·수협 근로자 자사 출자지분 배당소득	•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지분 - 소액주주 -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	비과세
조특법 §88의5	• 조합등 출자금과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2020.12.31.까지 배당 - 거주자로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등 - 1천만원 한도 이내 출자	비과세
		• 2021.1.1.이후 배당 - 거주자로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등 - 1천만원 한도 이내 출자 - 2021.1.1.~2021.12.31. 배당 - 2022.1.1.이후 배당	분리과세 5% 9%
조특법 §89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 2014.12.31.까지 가입 - 거주자 - 계약기간 1년 이상 - 1천만원 한도 이내 납입(20세 이상인 자), 3천만원 한도 이내 납입(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 계약기간 1년 이상 - 개인지방소득세 비과세	분리과세 9%

근거법령	소득 종류	조세특례 요건	세 율
조특법 §89의3	• 조합등 예탁금 이자소득	• 2007.1.1.~2020.12.31. 발생 - 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등 - 3천만원 한도 이내 예탁	비과세
		• 2021.1.1. 이후 발생 - 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등 - 3천만원 한도 이내 예탁 - 2021.1.1.~2021.12.31. 발생 - 2022.1.1. 이후 발생 - 개인지방소득세 비과세	분리과세 5% 9%
조특법 §91의6	• 해외자원개발투자 (전문)회사 배당 소득	• 2016.12.31.까지 배당 - 거주자 -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2억원 초과(종합과세)	분리과세 9% 14%
조특법 §91의12	• 재외동포전용투자 신탁등 배당소득	• 2010.12.31.까지 가입 -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동포 - 2012.12.31 까지 배당받는 소득 - 투자신탁별 투자금액 1억원 이하	비과세
		• 2010.12.31.까지 가입 -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동포 - 2012.12.31 까지 배당받는 소득 - 투자신탁별 투자금액 1억원 초과	분리과세 5%
조특법 §91의14	• 재형저축 이자· 배당소득	• 2015.12.31.까지 가입 - 거주자(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분기별 300만원 한도 이내 납입 - 계약기간 7년 이상(1회 한하여 3년이내 연장가능) - 7년이내 해지·인출시 감면세액 추징. 단,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및 청년층* 가입자는 3년이내 * 일반형 가입자 중 중소기업근무, 고졸이하, 15~29세인 청년(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비과세
조특법 §91의15	• 고위험고수익투자 신탁 이자·배당소득	• 2016.12.31.까지 가입 - 거주자 - 계약기간 1년~3년, 3년까지만 특례 -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 투자금액 3천만원 초과(종합과세)	분리과세 14%

근거법령	소득 종류	조세특례 요건	세 율
조특법 §91의17	•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 투자기구 과세특례 (2016.1.1. 신설)	• 2017.12.31.까지 투자 - 거주자 -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 해외상장주식(가입일부터 10년간 투자하여 취득)의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조특법 §91의18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이자·배당 소득(2016.1.1. 신설)	• 2021.12.31.까지 가입 -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근로·사업소득자 또는 농어민(직전연도 기준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인 거주자 - 연 2,000만원 한도 이내 납입 - 5년이내 해지·인출시 감면세액 추징.단,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및 청년(15~29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가입자는 3년이내 - 200만원(400만원*)이하 이자·배당소득 - 200만원(400만원*)초과분 이자·배당소득 *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농어민형)	비과세 분리과세 9%
조특법 §91의19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2019.1.1.신설)	• 2021.12.31.까지 가입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금융회사가 국방부장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월 40만원 한도로 납입 - 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동안 비과세 가능 - 가입시 「가입자격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 * 발급기관 : 국방부, 병무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비과세
조특법 §104의27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2015.1.1. 신설)	•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몰종료) -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 - 9%세율 원천징수 - 분리과세 신청시 25%세율로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분리과세 25%

국세청
www.nts.go.kr

제9장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www.nts.go.kr/kor

제 9 장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소법 §133, 소령 §193)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법법 §74, 법령 §117)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 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소령 §217)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2. 지급명세서 제출

가. 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소법 §164, 소령 §213)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과세제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국세청
www.nts.go.kr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같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 「소득세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 지급일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금융회사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입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118]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③ 법인
④ 복식부기의무자

1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3) 지급명세서 제출의 갈음 (소령 §215)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기한 연장 (소령 §216)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kor

나.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법법 §120, 법령 §162)

1)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또는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교. 법인세법에 의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① 원천징수 :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및 동항 제2호(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② 지급명세서 제출 :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이자소득) 및 동항 제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자신탁의 이익을 제외한 배당소득(예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

예규. 서면법규과-475, 2014.05.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

다만,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소득(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 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제배당)에 따른 소득

3)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기한 연장 (법령 §163)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②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출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지급명세서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가산세

가.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국기법 §47의5)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
www.nts.go.kr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19)]

[(미달세액 × 3%) + {(미달세액 × 경과일수) × 25/100,000*}] ≤ (미달세액 × 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①「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②「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공적연금소득)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③「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

11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 · 환급불성실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 불분명가산세

1) 소득세법상 가산세 (소법 §81, 소령 §147)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요항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나)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1)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의 종류 ·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①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국세청
www.nts.go.kr

2) 법인세법상 가산세 (법법 §75의7, 법령 §120⑨~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요항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제85조(중간신고)·제87조(결정 및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대상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나)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1)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①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② ①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4.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가. 징수의무자

1) 법인명 (상호), 영문법인명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를 기재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재

2) 대표자 (성명)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징수의무자 성명 기재

3)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4) 주민(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기재하지 않음

5) 소재지 또는 주소

사업자인 경우 본점소재지(법인) 또는 사업장소재지(개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

국세청
www.nts.go.kr/kor

나. 소득자

1) 성명 (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외국인은 여권에 기록된 영문 성명 전부), 법인인 경우 법인명(외국법인은 머리글자가 아닌 영문으로 된 정식 명칭 전부), 단체인 경우 단체명을 기재

2)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다음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기재

☞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기재

3) 소득자구분코드

소득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거래시 사용하게 되는 실지 명의에 의해 구분코드를 기입

소득자 구분			명 의	소득자 번호	코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 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 란	999

가)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자(부랑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개인을 말함

나) 기타임의단체 (3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기재

☞ "111"코드 등 개인으로 작성 시 금융거래를 한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으로 구분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문제 발생

다) 비실명 (999)

소득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재

☞ 비실명 금융거래 등으로 42%(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반드시 "999"로 작성

국세청
www.nts.go.kr/kor

라) 기타 (411 · 413)

소득자의 개인 · 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 관련 문서번호로 거래를 하는 경우 "411" 또는 "413"으로 기재

4) 주소

소득자의 주소를 기재.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기재

5) 거주구분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

☞ 비거주자는 거주구분을 "2"로 기재하되,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

6)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 기재.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LN)를 기재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가나	GH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UM	불령 폴리네시아	PF	에스토니아	EE	코트디봐르	CI
가봉	GA	마이크로네시아	FM	브라질	BR	에쿠아도르	EC	콜롬비아	CO
가이아나	GY	마카오	MO	브루나이	BN	엘살바도르	SV	콩고	CG
감비아	GM	마티니크	MQ	사모아	WS	영국	GB	쿠바	CU
과델로프	GP	말라위	MW	사우디아라비아	SA	영령 버진군도	VG	쿠웨이트	KW
과테말라	GT	말레이시아	MY	사이프러스	CY	영령 인도양	IO	쿡 아일랜드	CK
괌	GU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LN	산마리노	SM	영령 캐이맨 군도	KY	크로아티아	HR
교황청	VA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사전승인받은 경우)	LM	상토메 프린스페	ST	예맨	YE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CX
그레나다	GD	말리	ML	서사하라	EH	오만	OM	키르기스	KG
그루지아	GE	메요트	YT	세네갈	SN	오스트리아	AT	키리바티	KI
그리스	GR	멕시코	MX	세이쉘	SC	온두라스	HN	타지크	TJ
그린랜드	GL	모나코	MC	세인트 루시아	LC	왈라스 & 퓨투나 군도	WF	탄자니아	TZ
기네비소	GW	모로코	MA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VC	요르단	JO	태국	TH
기니	GN	모리셔스	MU	세인트 키츠 네비스	KN	우간다	UG	터키	TR
나미비아	NA	모리타니	MR	세인트 피레 미켈론	PM	우루과이	UY	토고	TG
나우르	NR	모잠비크	MZ	세인트 헬레나	SH	우즈베크	UZ	토켈라우	TK
나이지리아	NG	몬트세라트	MS	소말리아	SO	우크라이나	UA	통가	TO
남아프리카	ZA	몰도바	MD	솔로몬 군도	SB	유고	YU	투르크 & 카이코스 군도	TC
남조지아&남샌드위치 군도	GS	몰디브	MV	수단	SD	이디오피아	ET	투르크멘	TM
네덜란드	NL	몰타	MT	수리남	SR	이라크	IQ	투발루	TV
네덜란드 열도	AN	몽골	MN	스리랑카	LK	이란	IR	튀니지	TN
네팔	NP	미국	US	스발비드 군도	SJ	이스라엘	IL	트리니다드 토바고	TT
노르웨이	NO	미령 버진군도	VI	스와질랜드	SZ	이집트	EG	티모르	TL
노폴크 아일랜드	NF	미얀마	MM	스웨덴	SE	이탈리아	IT	파나마	PA
뉴 칼레도니아	NC	바누아투	VU	스위스	CH	인도네시아	ID	파라과이	PY
뉴질랜드	NZ	바레인	BH	스페인	ES	인디아	IN	파로에 군도	FO
니우에	NU	바베이도스	BB	슬로바키아	SK	일본	JP	파키스탄	PK
니제르	NE	바하마	BS	슬로베니아	SI	자마이카	JM	파푸아 뉴기니	PG
니카라과	NI	방글라데시	BD	시리아	SY	자이레	ZR	팔라우	PW
대만	TW	버뮤다	BM	시에라 리온	SL	잠비아	ZM	팔레스타인	PS
덴마크	DK	베네주엘라	VE	싱가포르	SG	적도 기니	GQ	페루	PE
도미니카	DM	베닝	BJ	아랍에미리트 연합	AE	중국	CN	포루투갈	PT
도미니카 공화국	DO	베라루스	BY	아루바	AW	중앙아프리카	CF	포클랜드 군도	FK
독일	DE	베트남	VN	아르메니아	AM	지부티	DJ	폴란드	PL
라오스	LA	벨기에	BE	아르헨티나	AR	지브랄타	GI	푸에르토리코	PR
라이베리아	LR	벨리제	BZ	아메리칸 사모아	AS	짐바브웨	ZW	프랑스	FR
라트비아	LV	보빗군도	BV	아이슬란드	IS	챠드	TD	피지	FJ
러시아 연방	RU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A	아이티	HT	체코공화국	CZ	피트카이른	PN
레바논	LB	보츠와나	BW	아일랜드	IE	칠레	CL	핀란드	FI
레소토	LS	볼리비아	BO	아제르바이잔	AZ	카나다	CA	필리핀	PH
루마니아	RO	부룬디	BI	아프카니스탄	AF	카메룬	CM	한국	KR
루안다	RW	부르키나 파소	BF	안도라	AD	카보 베르데	CV	허드 앤 맥도날드 군도	HM
룩셈부르그	LU	부탄	BT	안타티카	AQ	카자흐	KZ	헝가리	HU
리비아	LY	북마리아나 군도	MP	안티가 바부다	AG	카타르	QA	호주	AU
리투아니아	LT	북한	KP	알바니아	AL	캄보디아	KH	홍콩	HK
리히텐슈타인	LI	불가리아	BG	알제리	DZ	케냐	KE	기타	ZZ
마다카스카르	MG	불령 가이아나	GF	앙골라	AO	코모로스	KM		
마샬군도	MH	불령 남부지역	TF	앙귈라	AI	코스 군도	CC		
마세도니아	MK	불령 리유니온,코모도 제도	RE	에리트리아	ER	코스타리카	CR		

국세청
www.nts.go.kr

7) 계좌번호 (발행번호)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기재

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기재

이자·배당소득자가 채권·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채권등의 종류, 발행일자,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 발행번호)를 기재

8) 신탁이익 여부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에 투자하여 받는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아래 그림의 ⑥) "여"로 기재

이자·배당소득을 신탁재산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경우(아래 그림의 ⑤) "부"로 기재

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가 신탁(아래 그림의 ⑥B➠A)에 투자하여 받는 이익이 아닌 모든 경우에 "부"로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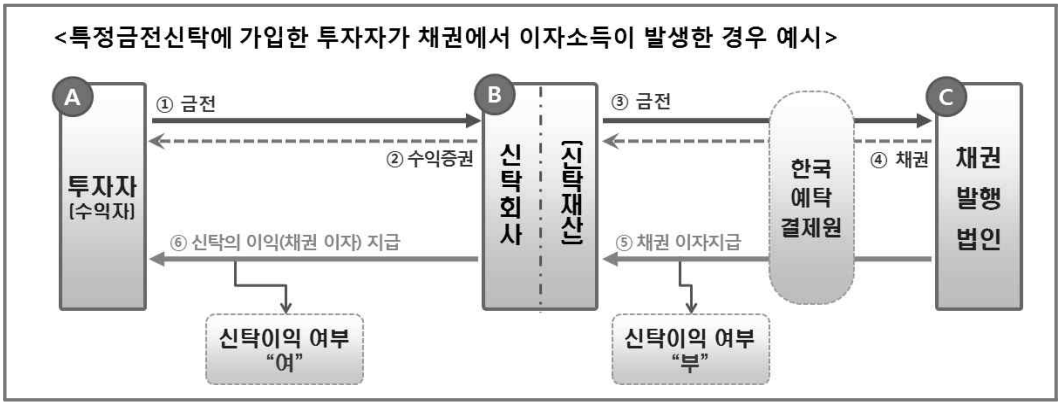

다. 지급내역

1) 지급일자

이자·배당소득의 실제 지급일자를 기재하되, 실제 지급일자와 다른 때에 원천징수한 경우(소법 §131, 법령 §111⑥) 해당 원천징수일자를 기재

2) 귀속연월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재

☞ 지급일자와 귀속연월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음에 유의

3) 과세구분

개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 상 미열거 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과세, 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소액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과세 (<14%)	고율과세 (>14%)	비실명	일반세율 (14%)	기본세율 (6~42%)	일반과세	일반과세 (Gross-up) 기타세율	일반과세 (Gross-up) 일반세율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 재산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 대상 외의 소득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① **(비과세·면제, E)**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영농조합법인 출자금 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농협·수협 근로자 자사 출자지분 배당,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등

② **(저율 분리과세, L)**

14% 미만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세율이 14% 미만인 소득 포함)

☞ 영농조합법인(5%), 영어조합법인(5%), 선박투자회사(9%),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5%), 세금우대저축(9%),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9%),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9%) 등

국세청
www.nts.go.kr

③ **(고율 분리과세, H)**

14% 초과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세율이 14% 초과하는 소득 포함)

☞ 분리과세 신청한 10년 이상 장기채권(30%), 분리과세 신청한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25%) 등

④ **(비실명, R)**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2%)과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소득(90%*)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정채권(97.12.31.~98.12.31. 사이에 발행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경우 20%(2001.1.1. 이후부터는 15%)

⑤ **(일반세율, O)**

14%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소득

☞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동창회, 종중, 마을회 등)가 지급받는 금액,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 선박투자회사 배당,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자·배당 등

⑥ **(기본세율, B)**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으로 현행법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만 해당

⑦ **(비거주자)**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거주자는 분리과세 과세구분을 기재.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제한세율 크기에 따라 저율(L) 또는 고율(H)로 기재하거나,「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 비과세(E)로 기재

⑧ **(일반과세, T)**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기재(단, 아래 ⑨의 Gross-up 대상 소득 제외)

☞ 비·분리과세 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등

⑨ **(Gross-up, D·G)**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는(Gross-up) 배당소득. 일반세율(14%)로 원천

징수하는 분은 일반세율(G)로 기재하고, 그 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분은 기타세율(D)로 기재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4의27)에 따라 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경우 기타세율(D)로 기재

⑩ **(과세제외, N)**

과세제외되는 장기 저축성보험차익 등과 같이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기재

사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과세구분

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해 14%로 원천징수한 경우 : G
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14%로 원천징수한 경우 : T
③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으로 9%로 원천징수한 경우 : D
④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14%로 원천징수한 경우 : T
⑤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29)에 대해 14%로 분리과세 한 경우 : O
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조특법§89)에 대해 9%로 분리과세 한 경우 : L
⑦ 분리과세 신청한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30%로 분리과세 한 경우 : H
⑧ 비과세 종합저축(조특법§88의2)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한 경우 : E

나)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① **(원천징수대상소득, C)**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소액부징수 포함)

② **(비과세·면제, X)**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③ **(투자신탁재산귀속, F)**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④ **(신탁재산귀속, I)**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자본시장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소득

국세청
www.n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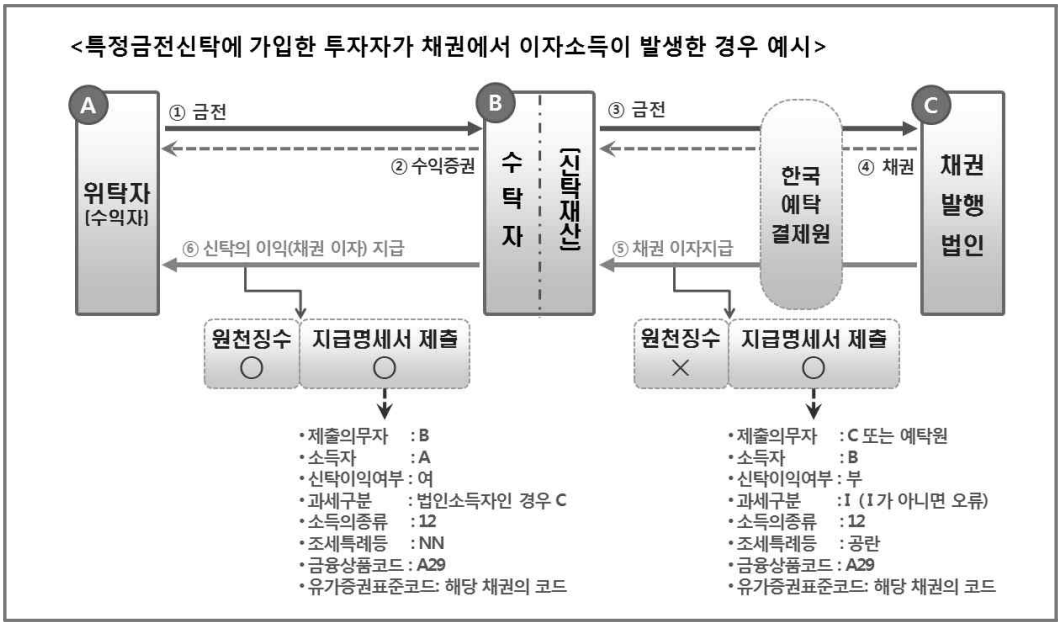

⑤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W)**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투자신탁의 이익을 제외한 배당소득(예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W)으로 기재

⑥ **(과세제외, N)**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되는 소득 등

과세제외, 비과세 · 면제,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의 차이

구 분	소득자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 신고시 과세대상 여부	원천징수대상 여부
① 과세제외(N)	×	×	×
② 비과세, 면제(X)	○	×	×
③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W)	○	○	×

① 과세제외 : 소득자인 법인 · 개인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기재

② 비과세, 면제 :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나, 「법인세법」·「조특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 · 면제되는 소득인 경우 기재

③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 : ①,②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이나 원천징수에서만 제외되는 경우 기재

4) 소득의 종류

가) 이자소득

소득의 종류	코드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1)	1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2)	1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법§16①3)	13
신용계 ·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법§16①4)	1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5)	1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①6)	1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법§16①7)	1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법§16①8)	1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미만 등)(소법§16①9)	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이상)(소법§164①8)	2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16①10)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법§16①11)	22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령§26④)	2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령§114의2②)	24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법§16①12)	25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법§16①13)	26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법§93 1호)	27

나) 배당소득

소득의 종류	코드
내국법인 배당 ·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법§17①1)	5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 분배금(소법§17①2)	52
의제배당(소법§17①3, 법법§16)	53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7①4)	5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법§17①5)	55
외국법인 배당 ·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법§17①6)	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법§17①7)	57

국세청
www.nts.go.kr

소득의 종류	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19 2호, 법법§93 2호)	58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법§17①8)	59
주가연계증권(소령§26의3①1, ELS)	60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령§26의3①2, DLS)	61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령§26의3②)	62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법§17①9)	63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법§17①10)	64
상장지수증권(소령§26의3①3, ETN)	65

다)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조세특례(비과세, 과세제외, 면제, 분리과세, 제한세율)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

구 분	코드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개인연금저축(조특법§86)	SA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86의3)	SB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87)	SC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SD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87의2)	SE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5)	SF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6)	SG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88의2)	SH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법§88의4⑨)	S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88의4⑩)	SJ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88의5)	SK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	SL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89의3)	SM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조특법§91의4)	SN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조특법§91의6)	SO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조특법§91의7)	SP

구 분	코드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조특법§91의8)	SQ
장기주식형저축(조특법§91의9)	SR
장기회사채형저축(조특법§91의10)	SS
미분양주택투자신탁(조특법§91의11)	ST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조특법§91의12)	SU
녹색저축 등(조특법§91의13)	SV
재형저축(조특법§91의14)	SW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91의15)	SX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	SZ
고배당기업 배당(조특법§104의27)	SY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TA
장병내일준비적금(조특법§91의19)	TB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A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20①)	PC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③)	P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21①1)	P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21①2)	P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21①3)	PG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①)	PU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29)	PH
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66②,③)	PI
영어조합법인 배당(조특법§67②,③)	PJ
농업회사 배당(조특법§68④)	PK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공익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	PN
발행일~상환약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소법§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PO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법§129②1)	PP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법§129②2본문)	PQ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법§129②2 단서)	PR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법§129④)	PS

국세청
www.nts.go.kr

구 분	코드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법§93의2)	PV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2000.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분(소득세법 부칙§2, 법률 제6051호)	P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한 경우	PY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기타	ZZ

① **(공란)** 과세구분이 "F, I, W, N"인 경우 반드시 공란으로 기재

②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조세조약」 등에 따른 비과세·면제·저율·분리과세·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세율(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 등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의 경우 기재

③ **(ZZ) 기타**

「(구)조세특례제한법」·「조세감면규제법」·「(구)소득세법」 등에 따라 비과세·면제·저율·분리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기재

라) 금융상품코드 :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

소득의종류 코드를 참고하여 금융상품코드를 기재, 소득의종류 코드가 금융상품코드표에 없는 소득은 금융상품코드를 공란으로 함

소득의 종 류	금융상품코드			
13 14 17 (예금 등)	원화 외화	A B	정기예금	01
			정기적금	02
			상호부금	03
			주택부금	04
			저축예금	05
			기업자유예금	06
			ELD	07
			기타저축성예금	08
			MMDA	09
			CMA	10
			기타요구불예금	11
			조합 등 예탁금	12
			일반 예탁금	13
			신용계	14
			신용부금	15
			예금보험공사 개산지급금	16
			기타	17
11 12 15 16 (채권 또는 증권)	원화 외화 (국내 발행) (해외 발행)	A B C	일반국채	21
			STRIPS(소령 §22의2①)	22
			물가연동채(소령 §22의2③)	23
			지방채	24
			특수채(토공,도로공,수공,예보 등)	25
			지방공사채	26
			금융채	27
			유동화SPC채	28
			일반회사채	29
			전환사채(소령 §193의2③)	30
			교환사채(소령 §193의2③)	31
			신주인수권부사채(소령 §193의2③)	32
			상환사채(상법령 §23)	33
63			파생결합사채(상법령 §24)	34
			이익참가부사채(상법령 §21)	35
			조건부자본증권(자본법 §165의6)	36
			예금증서(소령 §102①1)	37
			기업어음	38
			표지어음	39
			발행어음	3A
			상업 · 무역어음 일반매출	3B
			기타채권	3C
19 20 (저축성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A B C	개인연금보험(조특법 §86)	41
			연금보험(조특법 §86의2외)	42
			변액보험(보험업법 §108①3)	43
			그 외 보험	44
25	원화	A	불특정금전신탁(공 · 사채)	46

소득의 종 류	금융상품코드			
51 56 (법인 배당)	대주주* 소액주주	A B	내국법인 상장	51
			내국법인 비상장	52
			외국법인 상장	53
			외국법인 비상장	54
53 (의제 배당)	대주주* 소액주주	A B	감자차익(소법 §17②1, 법법 §16①1)	61
			자본전입(소법 §17②2, 법법 §16①2)	62
			해산 잔여재산 분배 (소법 §17②3,법법§16①4)	63
			합병차익(소법 §17②4, 법법 §16①5)	64
			자기주식 보유법인의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타 주주 지분 비율증가(소법 §17②5, 법법 §16①3)	65
			분할차익(소법 §17②6, 법법 §16①6)	66
55 (집합 투자 기구)	원화 외화 (ETF의 경우)	A B	국내 공모투자신탁 · 투자(익명)조합	71
			국내 공모투자회사 · 투자유한(합자)회사	72
			국내 사모투자신탁 · 투자(익명)조합	73
			국내 사모투자회사 · 투자유한(합자)회사	74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75
	원화(국내 상장주식만) 원화 (기타)	C D	국내 투자신탁형 ETF	76
			국내 투자회사형 ETF	77
			해외 공모투자신탁 · 투자(익명)조합	78
			해외 공모투자회사 · 투자유한(합자)회사	79
	외화(국내 상장주식만) 외화 (기타)	E F	해외 사모투자신탁 · 투자(익명)조합	80
			해외 사모투자회사 · 투자유한(합자)회사	81
			해외 사모투자전문회사	82
			해외 투자신탁형 ETF	83
			해외 투자회사형 ETF	84
			역외 공모투자신탁 · 투자(익명)조합	85
			역외 공모투자회사 · 투자유한(합자)회사	86
			역외 사모투자신탁 · 투자(익명)조합	87
			역외 사모투자회사 · 투자유한(합자)회사	88
			역외 사모투자전문회사	89
			역외 투자신탁형 ETF	8A
			역외 투자회사형 ETF	8B
61 (기타 파생 결합 증권)	원화 외화	A B	증권(소령 §26의3①1호 외)	91
			통화	92
			농산물(이를 원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 포함, 이하 같음)	93
			축산물	94
			수산물	95
			임산물	96
			광산물	97
			에너지	98
			신용위험의 지표	99
			기타	9A
			복합	9B

☞ (대주주) 내국법인의 경우 소령§157④에 따른 대주주, 외국법인의 경우 각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달라지는 기준 비율 이상을 소유한 자를 뜻함

☞ 집합투자기구 중 ETF(□76, □77, □83, □84, □8A, □8B)의 경우 A 또는 B가 아닌 C, D, E, F 중 해당되는 코드를 적습니다.

국세청
www.nts.go.kr/kor

마) 유가증권표준코드

①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

②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받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해당 코드를 기재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받은 코드를 기재

☞ 단축코드가 아닌 코드 전체를 기재

③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유가증권 발행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단,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기재

④ 신탁의 경우 신탁에서 투자한 금융상품별로 유가증권표준코드 기재

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중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 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

바) 채권이자구분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재

①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채권이자구분을 "00"으로 기재

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95.12.31.이전 또는 '01.7.1.~'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 최종 이자지급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세

㉮ 낮은 세율 적용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로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이자구분 "55" 기재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개인이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채권을 중도매도한 경우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고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한 경우(금융기관은 원천세 신고시 조정환급)

채권이자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55	200,000	200,000	10	20,000		1,000

㉯ 낮은 세율 적용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로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이자구분 "77" 기재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을 중도매도 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일반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개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채권이자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77	200,000	200,000	15	30,000	3,000	

㉰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법인을 소득지급자로 보며, 채권이자구분코드를 "77"로 기재하여 당해 법인이 거주자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 30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45,000원, 주민세는 4,500원임

채권이자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77	300,000	300,000	15	45,000	4,500	

㉱ 일반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을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의제원천징수세액은 "77", 의제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88"로 기재

개인이 30%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장기채권을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도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300,000원, 납부할 세액은 45,000원("88")과 주민세 9,000원임

국세청
www.nts.go.kr

채권이자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77	300,000	300,000	15	45,000	9,000	
88	300,000	300,000	15	45,000		

㈐ 거주자등이 이자지급일에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등 총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채권이자구분 "66") 및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채권이자구분 "99")을 구분하여 기재

법인 A가 1년 만기 채권을 매수하여 3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 B에게 중도매도하고 법인 B가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음(1년 이자 1,200,000원, 보유기간 이자 900,000원)

채권이자구분	지급액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66	1,200,000	1,200,000	15	180,000		
99	900,000	900,000	15	135,000		

사) 지급대상기간

이자·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기재. 다만, 배당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의 경우에만 기재

구분	지급대상기간
보험	계약일~만기일(중도해지일)
예금	지급하는 이자소득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
펀드	수익증권 등 매수일(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다음 날 ~ 매도일(결산·분배일, 환매일, 해지·해산일)
채권	매수일(발행일 또는 직전원천징수일)의 다음 날 ~ 매도일(이자 지급일)

☞ 잘못 기재한 사례

- 지급일자(2019.6.30.)를 그대로 기재 ➠ 2019.6.30.~2019.6.30.
- 지급일자(2019.6.30.)가 속하는 과세연도 기재 : 2019. 1. 1.~2019.12.31.

아) 이자율 등

이자소득은 이자율을 기재. 다만,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1좌당(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기재

① 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자율

⇒ (이자소득금액/이자지급당시 원금) × 100 × (365/이자지급대상기간일수)

② 채권등의 이자율

표면이자율 또는 만기보장수익률 등 지급액(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사용된 연이자율 기재하되, 표면이자율 또는 만기보장수익률 등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이자율 (예, 취득가액을 이동평균법으로 산정)

⇒ (이자소득금액/이자지급당시 채권등 보유금액) × 100

자) 세율

실제 세액계산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기재하며, 소액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기재(비과세인 경우에는 세율을 "0"으로 기재)

원천징수세율 변천(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구분	1998.1.1.이후	1998.10.1.이후	2000.1.1.이후	2001.1.1.이후	2001.7.1.이후	2005.1.1.이후
개인	20%	22%	20%	15%	15%	14%
법인	20%	22%	20%	20%	15%	14%

차) 세액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아니하고, 소액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1천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기재

카) 기타

약정에 따라 주기적(월·분기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만기일 이전에 해약(중도해지)한 경우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으로 수정하여 제출

☞ 재계산된 이자소득, 세율, 세액 외의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은 제출하였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국세청
www.nts.go.kr/kor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 다만,「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급명세서 작성 사례

가. 내국법인(비상장)이 주주(대주주)에게 일반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나. 내국법인(비상장)이 주주(소액주주)에게 일반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 내국법인이 개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라. 개인이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마. 영농조합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조합원(소액주주)에게 배당금(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 분) 지급

바. 영농조합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조합원(소액주주)에게 배당금(과세소득 발생 분) 지급

사. 농업회사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출자자(소액주주)에게 배당금(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 분) 지급

아. 농업회사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출자자(소액주주)에게 배당금(과세소득 발생 분) 지급

자. 내국법인(비상장)이 우리사주조합원(소액주주 등 비과세요건 충족)에게 배당금 지급

차. 내국법인(비상장)이 우리사주조합원(비과세요건 미충족한 소액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카. 내국법인(비상장) 감자차익에 의한 의제배당(대주주, Gross-up 대상)

타. 내국법인(비상장) 자본전입(토지재평가차익)에 의한 의제배당(대주주, Gross-up 제외 대상)

파.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상장외국법인의 배당, 소액주주, 외국 원천징수세율 10%)

하.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경우(상장외국법인의 배당, 소액주주, 외국 원천징수세율 15%)

거. 기타임의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이자소득 지급{△△동창회(△△△)에게 정기예금 이자소득 지급}

너. 보험료 지급{10년 미만 저축성보험(생명보험)의 보험료 지급}

더. 보험료 지급{10년 이상 저축성보험(생명보험)의 보험료 지급}

러. 신탁재산에 소득 지급(채권발행법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소득 지급(신탁업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버. 장기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자소득 발생기간 : 1996.1.1.~2018.12.31.)

서. 비거주자 소득이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제한세율 10%)

어. 거주자 소득이 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브라질 채권 이자소득)

www.nts.go.kr 국세청

가. 내국법인(비상장)이 주주(대주주)에게 일반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징 수 의무자	△△산업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서울 종로 수송 ###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소득자	○○○	######-#######		111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서울 종로 인사 ###	V 거주자	2 비거주자				1 여	V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 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 특례 등	⑲ 금융 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2019	03	31	2019	03	G	51	NN	A52	◇◇◇-◇◇-◇◇◇◇◇				10,000,000	14	1,400,000		140,000		1,540,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일반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 일반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나. 내국법인(비상장)이 주주(소액주주)에게 일반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산업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111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		⑩ 거주구분 [V] 거주자 [2]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1] 여	[V]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3	31	2019	03	G	51	NN	B52	◇◇◇-◇◇-◇◇◇◇◇				10,000,000	14	1,400,000		140,000		1,540,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일반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 일반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다. 내국법인이 개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산업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111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		⑩ 거주구분 [V] 거주자 [2]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1] 여 [V]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 기 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T	22	NN				20180101 20181231	0.10	10,000,000	25	2,500,000		250,000		2,750,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소득의 종류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금융상품코드란 공란
금융상품코드를 적용하지 않는 소득은 금융상품코드란을 반드시 공란으로 기재

라. 개인이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건설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211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거주자	☐ 비거주자				☐ 여 ☑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 기 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C	22	NN				20180101 20181231	0.10	10,000,000	25		2,500,000			2,500,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원천징수대상 법인의 과세구분은 "C" 기재**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마. 영농조합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조합원(소액주주)에게 배당금(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 분)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징수의무자	(주) 영농		김 영 농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111111-3222222	서울 종로 수송 213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소득자	조 합 원	######-########		111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⑴ 거주자	⑵ 비거주자				⑴ 여	⑵ 부
서울 종로 인사 100	⑴						⑵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E	51	PI	B52	###-##-#####				10,000,000	0	0		0		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영농조합법인 비과세 소득 지급시 작성

바. 영농조합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조합원(소액주주)에게 배당금(과세소득 발생 분)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주) 영농		김 영 농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111111-3222222	서울 종로 수송 213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대 주 주	######-########		111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서울 종로 인사 55-1		☑ 거주자	☐ 비거주자				☐ 여	☑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L	51	PI	B52	###-##-#####				1,000,000	5	50,000		5,000		55,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영농조합법인 과세 소득 지급시 작성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사. 농업회사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출자자(소액주주)에게 배당금(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 분)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주) 농업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김 농 업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111111-4222222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212		

소득자	⑥ 성명(상호) 출 자 자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111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101		⑩ 거주구분 ☑ 거주자	☐ 2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1 여 ☑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E	51	PK	B52	###-##-#####				10,000,000	0	0		0		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농업회사법인 비과세 소득 지급 시 작성**

아. 농업회사법인(비상장 내국법인)이 출자자(소액주주)에게 배당금(과세소득 발생 분)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 · 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징 수 의무자	(주) 농업		김 농 업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111111-4222222	서울 종로 수송 212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소득자	출 자 자	######-#######		111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서울 종로 인사 101		☑ 거주자	☐ 비거주자				☐ 여	☑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 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 특례 등	⑲ 금융 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0	51	PK	B52	###-##-#####				10,000,000	14	1,400,000		140,000		1,540,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농업회사법인 과세 소득 지급 시 작성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자. 내국법인(비상장)이 우리사주조합원(소액주주 등 비과세요건 충족)에게 배당금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주) 우리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김 우 리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111111-5222222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211		

소득자	⑥ 성명(상호) 조 합 원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111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101-1		⑩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여 ☑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E	51	SI	B52	###-##-#####				10,000,000	0	0		0		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비과세소득 세율란은 0% 기재

차. 내국법인(비상장)이 우리사주조합원(비과세요건 미충족한 소액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주) 우리		김 우 리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111111-5222222	서울 종로 수송 211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조 합 원	######-########		111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거주자	☐ 2 비거주자				☐ 1 여	☑ 부
서울 종로 인사 101-1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G	51	NN	B52	###-##-#####				10,000,000	14	1,400,000		140,000		1,540,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Gross-up 대상은 과세구분을 "G"로 기재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카. 내국법인(비상장) 감자차익에 의한 의제배당(대주주, Gross-up 대상)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주) 의제		김 의 제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111111-5222222	서울 종로 수송 212-1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김 의 제	######-########		111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거주자	☐ 비거주자				☐ 여	☑ 부
서울 종로 인사 150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5	01	2019	05	G	53	NN	A61	###-##-#####				1,000,000	14	140,000		14,000		154,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Gross-up 대상은 과세구분을 "G"로 기재

타. 내국법인(비상장) 자본전입(토지재평가차익)에 의한 의제배당(대주주, Gross-up 제외 대상)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주) 의제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김 의 제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111111-5222222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212-1		

소득자	⑥ 성명(상호) 김 의 제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111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150		⑩ 거주구분 ☑ 거주자	☐ 2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1 여	☑ 2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5	01	2019	05	T	53	NN	A62	###-##-#####				1,000,000	14	140,000		14,000		154,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Gross-up 제외 대상은 과세구분을 "T"로 기재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파.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상장외국법인의 배당, 소액주주, 외국 원천징수세율 1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 · 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증권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111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		⑩ 거주구분 [V] 거주자 [2]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1] 여	[V]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 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 특례 등	⑲ 금융 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2019	02	01	2019	02	T	56	PS	B53	##########				1,000,000	14	40,000		4,000		44,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세율은 14%, 원천징수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으로 기재할 것**

하.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경우(상장외국법인의 배당, 소액주주, 외국 원천징수세율 15%)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 · 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증권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	######-#######		111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거주자	☐ 2 비거주자				☐ 1 여	☑ 부
서울 종로 인사 ###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2	01	2019	02	T	56	PS	B53	##########				1,000,000	14	0		0		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세율은 14%, 외국 원천징수세율이 국내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0'으로 기재할 것**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거. 기타임의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이자소득 지급{△△동창회(△△△)에게 정기예금 이자소득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은행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동창회(△△△)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331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		⑩ 거주구분 [V] 거주자 [2]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발행번호) **********	⑬ 신탁이익 여부 [1] 여	[V]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 기 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2019	02	01	2019	02	0	13	NN	A01			20180101 20181231	0.03	1,000,000	14	140,000		14,000		154,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기타임의단체(동창회, 종중, 마을회 등)가 지급받는 금액은 분리과세, 소득자구분코드 "331"
기타임의단체(비거주자, 2000년 이전소득)의 조세특례등이 "NN"인 경우 과세구분이 "T, G"가 아니어도 오류 제외

너. 보험료 지급{10년 미만 저축성보험(생명보험)의 보험료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보험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111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		⑩ 거주구분 V 거주자	2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	⑬ 신탁이익 여부 1 여 2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2	01	2019	02	T	19	NN	AUU			20100101 20181231	0.03	1,000,000	14	140,000		14,000		154,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과세구분을 분리과세(O)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더. 보험료 지급{10년 이상 저축성보험(생명보험)의 보험료 지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 · 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보험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	######-#######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서울 종로 인사 ###		⑴ 거주자	⑵ 비거주자			**********	⑴ 여	⑵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천징수세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2	01	2019	02	N	20		AIII			20060101 20181231	0.05	1,000,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과세구분이 'F, I, W, N'인 경우 조세특례등을 '공란'으로 기재할 것
과세구분이 'N'인 경우 세율을 '공란'으로 기재할 것

러. 신탁재산에 소득 지급(채권발행법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주)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신탁	□□□-□□-□□□□□		211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거주자	② 비거주자				① 여	☑ 부
서울 종로 인사 ###					**********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 기 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2019	02	01	2019	02	I	12		A29	채권번호 또는 발행사업자번호	00	20180101 20181231	0.1	1,000,000	0		0			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과세구분이 'F, I, W, N'인 경우 조세특례등을 '공란'으로 기재
과세구분이 'E, X, F, I, W'인 경우 세율을 '0'으로 기재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소득 지급(신탁업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 · 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신탁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주)	###-##-#####		211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서울 종로 인사 ###	⊻ 거주자 [2] 비거주자			**********	⊻ 여 [2]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2	01	2019	02	C	12	NN	A29	채권번호 또는 발행사업자번호	00	20180101 20181231	0.1	1,000,000	14		140,000			140,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신탁재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채권 이자 등)로 과세구분 등을 작성

버. 장기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이자소득 발생기간 : 1996.1.1.~2018.12.31.)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보험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거주자 ☐ 비거주자			**********	☐ 여	☑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천징수세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T	13	NN	A01			19960101 19971231	0.03	2,000,000	15	300,000		30,000		330,000
2019	01	01	2019	01	H	13	PX	A01			19980101 20001231	0.03	3,000,000	20	600,000		60,000		660,000
2019	01	01	2019	01	T	13	NN	A01			20010101 20041231	0.03	4,000,000	15	600,000		60,000		660,000
2019	01	01	2019	01	T	13	NN	A01			20050101 20181231	0.03	15,000,000	14	2,100,000		210,000		2,310,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소득발생구간별로 원천징수세율 적용(금융소득종합과세기간 : 1996년~1997년, 2001년~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외의 기간의 소득은 과세구분을 분리과세, 조세특례등을 "PX"로 기재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서. 비거주자 소득이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제한세율 1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 · 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징 수 의무자	○○은행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소득자	▽▽▽	######-########	######	131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1 거주자	V 비거주자	미국	US	**********	1 여	V 부
서울 종로 인사 ###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 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 특례 등	⑲ 금융 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 기 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L	13	PT	A01			20180101 20181231	0.03	1,000,000	10	100,000		10,000		110,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비거주자의 경우 생년월일,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반드시 기재하고, 과세구분코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코드 기재

어. 거주자 소득이 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브라질 채권 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 · 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2,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증권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 종로 수송 ###		

소득자	⑥ 성명(상호)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111				
	⑨ 주 소 서울 종로 인사 ###		⑩ 거주구분 ☑ 거주자	☐ 2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1 여 ☑ 부

지 급 내 역

⑭ 지급일자			⑮ 귀속연월		⑯ 과세 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 특례 등	⑲ 금융 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 기 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2019	01	01	2019	01	E	16	PZ	C21	%%%%%%%%	00	20180101 20181231	0.07	1,000,000	0	0		0		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거주자 · 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코드를 "PZ"로 기재

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kor

참고자료

국세청
WWW.NTS.GO.KR

1.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관리제도 (조특법 §89의2)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금융회사 등)은 각 저축별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자료란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과 저축성보험의 보험금등(보험금·공제금·해지환급금·중도인출금) 지급금액을 말한다.

가. 세금우대저축 종류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③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④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나. 세금우대저축 통보기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 수, 계좌 수, 저축 납입금액, 보험금 등 지급금액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세금우대저축 열람 등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국세청장 또는 저축자의 요구 또는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세금우대저축자료 보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비밀유지 등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금융기관 등 종사자)는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청장의 열람 등 요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가산세 (조특법 §90의2)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정해진 기간 이내(「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국세청
www.nts.go.kr

다만,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과세자료 (조세특례 적용대상 금융상품) 제출

가. 과세자료제출법 개정 (2013.2.23.)

「과세자료제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84호에 따라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등에 관한 자료(별지 제97호서식)가 제출대상에 추가됨

나. 제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 제출상품 및 서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저율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으로 판단된 경우

ex) 저축성보험, 재형저축,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

라. 제출서류 :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는 서류

관련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제출서류	약관	약관, 집합투자규약,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기타 관련서류	상품설명서, 표준계약서 서식, 홍보물 등		

마. 제출시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약관 등 자료를 제출·보고·신고할 때 제출하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제출

바. 제출서식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신설 2013.2.23>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1. **제출기관 및 금융상품**

제출기관		금 융 상 품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판매예정 연월	과세구분	금융상품명

2.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

작 성 방 법

1. 제출기관 :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을 적습니다.
2. 금융상품 판매예정 연월 :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 시작할 예정 연월을 적습니다.
(상품판매 예정연월이 2012년 12월인 경우 : 201212)
3. 금융상품 과세구분 : 작성대상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과세구분'을 적습니다.
※ 과세구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참고
4. 금융상품명 : 띄어쓰기 없이 적습니다.[국문·영문 혼합 가능, 특수문자(「」, 쉼표 등) 제외]
5.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6.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서류 등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7. 기타(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 :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상품구조 등을 적습니다.(상품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국세청
www.nts.go.kr/kor

3. 원천징수 신고자료 서식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채권등 매출확인서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5)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6)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7)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8)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9) 세액면제신청서(영농조합법인)
10) 세액면제신청서(영어조합법인)
11) 세액면제신청서(농업회사법인)
12)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13)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
14)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분리과세명세서
15)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1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17)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8) 특별해지사유신고서
19)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0)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21) 무주택 확인서
22) 환급신청서
23)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3.20>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A44								
		그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kor

작 성 방 법 (1)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소득세법」 제164조 및「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 · 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 · ⑩)란에는 소득세 · 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02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 · 인적용역 · 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❶)과 환급세액 조정(❷)
   가. 소득지급(④ · 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 · 기타 · 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 ~ 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 = A05 + A06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작 성 방 법 (2)

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 · 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 ·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 · 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 · 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 ·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⑨]은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⑮ ~ ⑰)란의 ⑯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 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 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⑰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8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㉑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 ·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 · 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 · 기타소득(A4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 · 이자(A50) · 배당(A60) · 법인원천(A8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 신고 · 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 · 납부 :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 · 납부 :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 · 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 · 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www.nts.go.kr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거주자(개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등예탁금	C06								
				조합등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자·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기타 이자·배당소득	C11								
		세금특례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93								
		세금우대		이자 (9%)	C12								
				배당소득 (9%)	C22								
		일반세율(14%) 분리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일반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9%)	C91								
				배당소득 (25%)	C92								
		비실명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 (25%)			C26								
		이자·배당소득 계			C30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7%	C59								
	해지추징세액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해지추징 계			C50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비거주자(개인)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계			C70								
법인원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소득		C76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 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20%	C88								
	법인세계			C90								

국세청
www.nts.go.kr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⑧) 및 납부세액(⑩·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조세특례제한법」및「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은 장기채권 (30%),「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는「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은「조세특례제한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9. [C61-C70](비거주자)란은「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0.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1. [C73](신탁재산 분배)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2.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3.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4.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5. [C81-C88]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6.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o「소득세법」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19.3.20.>

[ ]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 이자 · 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이익 여부 [ ] 여 [ ] 부	

지 급 명 세

⑭ 지급일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	⑲ 금융상품 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 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이자 구분	㉒ 지급대상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㉚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 ⑯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⑰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

작 성 방 법

1. 서식제목 : 해당 자료(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12. ⑨ 주소란 :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배당소득자가 채권·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익 여부란 :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17. ⑭ 지급일란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란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⑯ 과세구분														
개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미열거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과세, 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액 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42%)	일반 과세	일반과세 (Gross-up) 기타 세율	일반과세 (Gross-up) 일반 세율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재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작 성 방 법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1)	1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17①1)	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소득세법§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16①3)	13	의제배당(소득세법§17①3, 법인세법§16)	53
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	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6)	16	외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19 2호, 법인세법§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16①9)	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164①8)	20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17①8)	5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16①10)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16①11)	22	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④)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114의2②)	24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②)	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6①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7①9)	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6①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7①10)	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93 1호)	27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3, ETN)	65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A
개인연금저축(조특법§86)	SA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B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86의3)	S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20①)	PC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87)	SC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③)	PD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S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21①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87의2)	S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21①2)	PF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5)	S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21①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6)	SG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①)	PU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29)	PH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법§88의4⑨)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66②,③)	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88의4⑩)	SJ	영어조합법인 배당(조특법§67②,③)	PJ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88의5)	SK	농업회사 배당(조특법§68④)	PK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89의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조특법§91의4)	SN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12 1)	PN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조특법§91의6)	SO	발행일~상환약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소법§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PO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조특법§91의7)	SP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129②1)	PP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조특법§91의8)	SQ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129②2본문)	PQ
장기주식형저축(조특법§91의9)	S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129②2 단서)	PR
장기회사채형저축(조특법§91의10)	SS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129④)	PS
미분양주택투자신탁(조특법§91의11)	ST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93의2)	PV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조특법§91의12)	SU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녹색저축 등(조특법§91의13)	SV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2000.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분(소득세법 부칙§2, 법률제6051호)	PX
재형저축(조특법§91의14)	SW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91의15)	S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한 경우	PY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	SZ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고배당기업 배당(조특법§104의27)	SY	기타	ZZ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TA		
장병내일준비적금(조특법§91의19)	TB		

국세청
www.nts.go.kr

작 성 방 법

20. ⑲ 금융상품코드란 :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중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㉑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95.12.31.이전 또는 '01.7.1. ~ '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	구「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	구「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	구「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㉒ 지급대상기간란 : 이자 · 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㉓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㉕ 세율란 :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㉖ 소득세 · ㉗ 법인세·㉘ 지방소득세 및 ㉙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1.3.28>

채 권 등 매 출 확 인 서

❶ 인적사항

매 수 자 (개인 또는 법인)	상 호(법 인 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매 도 자 (법 인)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❷ 채권등의 매도내역

① 종목명	② 유가증권 표준코드	③ 권 종	④ 매 수	⑤ 채권등 번호	⑥ 액면금액합계	⑦ 보유기간(일 수)	⑧ 적용이자율	⑨ 원천징수세액
						. . . 부터 . . . 까지 (일)		
합 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제2호에 따라 채권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자(법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이 확인서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채권등(집합투자증권 포함)을 매도한 경우로서 실물출고가 있는 경우에 매수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종목명란 :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집합투자증권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채권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4. ⑦보유기간란 : 매수일(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결산·분배일)과 매도일을 각각 적으며, ( )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2항의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일수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매수일(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결산·분배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적습니다.
5. ⑧적용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처리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4서식] <개정 2014.3.14>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1. 인적사항

매수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매도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명세

종목명	종목코드	거래금액	거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채권 발행일	이자산정방법		이자율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원래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단리채, 할인채 등), 계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세청 www.kyg.nts.go.kr

[별지 제71호의3서식] <개정 2010.3.31> (앞쪽)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관리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법인명(상호)		법인소재지(주소)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환 급 신 청 내 역

① 종목명 (액면가액)	② 종목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①×⑤×⑥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⑧ 세율	⑨ 법인세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kor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5서식] <개정 2014.3.14>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1. 인적사항

차입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대여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2. 대차거래 명세 (단위 : 원, %)

① 종목명	② 종 목 코 드	③ 거래금액	④ 거 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⑤ 채권발행일	⑥ 이자산정방법		⑦ 이자율	⑧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이 확인서는 채권의 차입자가 원래 차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로서 그 채권이 대차거래채권인 경우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합니다.
2. ① 종목명란과 ②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 복리채 · 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 · 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6서식] <개정 2014.3.14>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앞쪽)

인적사항	법 인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환급신청명세

① 종목명 (액면가액)	② 종목 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①×⑤×⑥)	⑧ 세율	⑨ 법인세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라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세청
www.nts.go.kr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세액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① 종목명란과 ②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③ 취득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을 적습니다.
4. ④ 매도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적습니다.
5. ⑥ 이자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
6.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대차거래채권 매매거래법인)는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별지 제68호의5서식)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의3서식] <개정 2008.3.31>

(앞쪽)

사업년도	. . . ~ . . .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연월일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① 채권등의 명칭 ( )	② 유가증권 표준코드	③ 채권이자 구 분	④ 신탁재산명 (법 인 명)	⑤ 이자지급일	⑥ 소득대상지급기간 (이자계산일수)	⑦ 이 자 율	⑧ 이자상당액	⑨ 세 율	⑩ 원천징수 세 액	⑪ 납 부 일 (징 수 일)
합 계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신탁재산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명란 :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점인 경우 법인의 본점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본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란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적습니다.
3. ①채권등의 명칭란 : 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 등 증권의 명칭을 적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적습니다.
4.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등 관련상품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증권등 관련상품 코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③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⑱채권이자구분란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6. ④신탁재산명(법인명)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명을 적며,「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탁재산명을 적습니다.
7. ⑤이자지급일란 : 이자지급일 또는 매도일 등을 적습니다.
8. ⑨세율란, ⑩원천징수세액란 :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9. ⑪납부일(징수일)란 :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5.3.13>

세액면제신청서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영농조합	④ 법 인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⑧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⑨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해당 과세기간 중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⑪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총소득금액	
⑫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⑬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⑩ × (⑫ ÷ ⑪)]	
⑭	감면대상배당소득 [Min(⑩-⑬, 1,200만원) + ⑬]	
⑮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 (⑩ -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세청
www.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9.3.20>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영어조합	④ 법 인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⑧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⑨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해당 과세기간 중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⑪	감면대상배당소득(1,200만원 또는 ⑩ 중 적은 금액)	
⑫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 (⑩ -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3.13>

세액면제신청서 (농업회사법인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농업회사법인	④ 법 인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⑧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⑨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해당 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⑪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⑫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⑬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⑭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⑮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전액 면제) [⑩ × (⑫ ÷ ⑪)]	
⑯	부대사업 등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분리과세)[⑩ × (⑬ + ⑭) ÷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세청
www.nts.go.kr

[별지 제58호의6서식] <신설 2008.4.2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가입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내용					
의견내용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수 수 료
	없 음

국세청 www.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5.3.13> (앞쪽)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기 간	. . . ~ . . .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일련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보유주식				한국예탁결제원 통보내용	⑧ 액면가액 합계액	⑨ 구분	⑩ 배당소득	⑪ 배당소득세
			③ 발행법인	④ 주식수	⑤ 액면가액	⑥ 배당일	⑦ 소유주식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

작 성 방 법

1. "① 성명" 및 "②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 발행법인"란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 주식수"란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4. "⑤ 액면가액"란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일"란에는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 소유 주식수"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5제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보하는 소유 주식수를 적습니다.
7. "⑧ 액면가액 합계액"란에는 ④ 주식수에 ⑤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구분"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5제2항에 따라 9%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9%분리과세"로 적으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 배당소득"란 및 "⑪ 배당소득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신설 2011.8.3>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기 간	. . . ~ . . .	법 인 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보유 집합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통보내역	⑧ 액면가액 합 계 액	⑨ 구분	⑩ 배당소득	⑪ 배 당 소 득 세
			③ 발행법인	④ 집합투자 증 권 수	⑤ 액면가액	⑥ 배당일	⑦ 소유집합투자 증권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제4항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kor

작 성 방 법

1. ① 성명란, ② 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 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 집합투자증권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증권 수를 적습니다.
4. ⑤ 액면가액란은 집합투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일란은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 소유집합투자증권수란은 법 제87조의6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에 통보하는 소유집합투자증권수를 적습니다.
7. ⑧ 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란의 집합투자증권수란에 ⑤란의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구분란은 법 제87조의6에 따라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5% 분리과세"로 적으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 배당소득란, ⑪ 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1.4.7> (앞쪽)

기 간	. . . ~ . . .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란은 적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유가증권표준코드	④ 우리사주취득일	⑤ 배당금지급기준일	⑥ 증권금융회사예탁일	⑦ 우리사주인출일	⑧ 취득주식액면가액합계	⑨ 배당소득	⑩ 납부세액	⑪ 환급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5항에 따라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kor

작 성 방 법

1. 우리사주조합원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우리사주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③ 유가증권 표준코드"란에는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부여한 유가증권 표준코드[증권선물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 홈페이지(http://isin.krx.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를 적으며,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 취득주식 액면가액 합계"란에는 우리사주 취득일 현재 우리사주 보유주식 총수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⑩ 납부세액"란에는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5. "⑪ 환급세액"란에는 비과세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국세청 www.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7서식] <개정 2015.3.13> (앞쪽)

기간	. . . .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 비과세 · 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란은 적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보유 주식				한국예탁결제원 통보내용	⑧ 액면가액 합계액	⑨ 구분	⑩ 배당소득	⑪ 배당소득세
			③ 발행법인	④ 주식수	⑤ 액면가액	⑥ 배당일	⑦ 소유 주식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 · 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kor

작 성 방 법

1. "① 성명" 및 "②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 발행법인"란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 주식수"란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4. "⑤ 액면가액"란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일"란에는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 소유 주식수"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6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보하는 소유 주식수를 적습니다.
7. "⑧ 액면가액 합계액"란에는 ④ 주식수에 ⑤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구분"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9%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9%분리과세"로 적으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 배당소득"란 및 "⑪ 배당소득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개정 2019. 3. 20.>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사업소득 유·무	근로·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서민형은 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을([ ]충족, [ ]미충족)·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을([ ]충족, [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증명서 상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 등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19.3.20>

특 별 해 지 사 유 신 고 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발생일	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⑨	벤처기업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 · 지변 ( )조합 ·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⑧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 · 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2⑧	연금저축		( )사망 ( )천재 · 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3⑧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천재 · 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장기주택마련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지 전 3개월 이내로 한정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⑫	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⑩	세금우대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의13⑤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⑪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 · 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2⑨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⑬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저축지급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해외이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3.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5. 폐업 : 폐업증명원 1부 6. 입원 등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7. 주택취득 :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8. 기타 사유 :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세청 www.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2서식] <신설 2019. 3. 20.>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사업소득 유·무	근로·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가입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1서식] <신설 2019. 3. 20.>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 내용

의견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의견서는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7서식] <개정 2019. 3. 20.>

무주택 확인서

본인은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또는 저축의 가입 당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하며,

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등「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예금주(본인) : (인)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_____(가족관계 기재)인 _____(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예금주(본인) :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리(수임)인 : (인)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 ·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8서식] <개정 2019. 3. 20.>

환 급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일	주택 취득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만 작성)	환급 신청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환급신청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 ]장기주택마련저축 ·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함)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추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21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세청
www.nts.go.kr/ko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3서식] <신설 2019. 3. 20.>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확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		

복무사항	입대일(소집일)	전역예정일(소집해제예정일)

	복무구분	발급기관	발급부서	담당자(연락처)
복무구분 및 발급기관	[ ] 현역병(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국방부		
	[ ] 상근예비역			
	[ ] 의무경찰	경찰청		
	[ ] 해양의무경찰	해양경찰청		
	[ ] 의무소방원	소방청		
	[ ]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급 기 관 직인

유 의 사 항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외에 다른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19년 귀속 금융소득 개정세법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소법 §129②)

<개정이유>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과 일치

종 전	개 정
□ 실명미확인(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 ○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 90%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 40%	□ 원천징수세율 인상 ○ (좌동) ○ 40% → 42%

<적용시기> '19. 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소법 §155의7)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비실명자산에 대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가 기본세율(14%)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신 설>	□ 비실명자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 완화 (좌동)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되고 그 부족액을 납부

<적용시기> '19.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kor

(3)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관계 명확화 (소득령 §184의4, 법인령 §111⑧)

<개정이유> 예탁증권 관련 원천징수 위임·대리관계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 (그동안 예규로 운용)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원칙)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예외) ①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관계가 있는 자 ② 대리·위임관계로 간주되는 자 - 어음 등을 인수·매매·중개하는 금융회사 * 어음·주식·채무증서·집합투자증권 -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 예탁증권의 원천징수 위임 · 대리관계 명확화 (좌동)
<추 가>	-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한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 *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 · 예탁자 명의 소유분 : 예탁결제원 · 예탁자의 투자자 명의 소유분 : 예탁자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87, 조특령 §81)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간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의무가입기간) 2년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가입기간 전체 기준) ＊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 : 연 600만원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가입분 ※ 요건 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와 동일 ※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부장관은 가입자가 가입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확인하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세액 추징 ○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 국세청장은 가입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세액 추징 ○ (증명서류 제출)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신설) ＊ 다만,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제출 가능 - 병적증명서(35세 이상의 경우)

<적용시기> ’19.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증명서류 제출은 ’19. 2. 12.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www.nts.go.kr/kor

(2)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91의19, 조특령 §93의5)

<개정이유> 장병의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적금요건) ①+② ① 금융회사가 국방부장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 ②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 이라는 문구를 표시 ○ (납입한도) 월 40만원 ○ (비과세 기간) 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가입분 ○ (가입절차) 가입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격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 * 발급기관 : 국방부, 병무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적용시기> '19.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확인서 제출은 '19. 2. 12.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조특법 §82의4⑮)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 세액환급명세서」 제출시기 ○ 비과세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시기 조정 ○ 비과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연1회) *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의 경우와 제출시기를 일치

<적용시기> '19. 2. 1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87의7)

○ 적용대상 :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로 지급 받는 배당소득*

*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

○ 과세특례 : 9% 분리과세

○ 세액의 추징 :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적용기한 : '21.12.31. 까지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8의2)

○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적용기한 1년 연장('20.12.31.까지)

국세청
WWW.NTS.GO.KR

본 내용은 2019.11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금융소득 원천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한 것입니다.

본 내용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본서의 내용 중에 약어로 표시된 관계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법 §	소득세법
소 령 §	소득세법 시행령
소 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 법 §	법인세법
법 령 §	법인세법 시행령
법 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득 원천징수 실무

발 행 일 자 : 2019년 12월 일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 : 원천세과장 지 성
행정사무관 김 재 산
국세조사관 이 대 희
국세조사관 김 태 형
국세조사관 이 정 아

※ 본 책자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